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상황 보 고 서 2021



위원장
고 광 록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발족된 지 어느덧 3주년이 되었습니다.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시간만 보냈다는 자괴감도 듭니다.

‘분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별심은 ‘나와 너, 좋고 싫음, 옳고 그름 등을 헤아려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객관적, 합리적이지 못하고 나와 내 생각,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면 편견과 아집에 빠지게 됩니다. 분별력은 키워져 분별심으로 남을 대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라고 판단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름은 인정하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분별심의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채 아집에 빠져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기와 생각,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면 모두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심각한 평가르기, 이익충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분음하수’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강물도 선을 그어서 다른 물을 마시지 않았을 정도로 심한 갈등의 시기를 거쳐 더 높은 차원의 이론적 성숙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대선과 이어지는 지선을 통하여 다양한 갈등이 생겨나고 또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릉은 남대천이라는 하나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시 분음하수를 할지라도 우리 강릉시민들은 더 높은 차원의 화합을 이루어내리라고 확신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갈등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결코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길도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생각이 다름을 설득하고, 분별심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존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상충하는 다른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뜻이 맞는 부분이나 이익이 있으면 우선으로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도 구존동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지역 공통이익에 있어서는 사익의 배제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강릉 사회의 갈등조정 및 해결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2022년 4월

인사말 / 02

I 위원회 운영개요

도입배경 / 08

연혁 / 09

위원회 소개 / 10

위원회 기능 및 권한 / 13

민원 처리절차 / 14

II 위원회 운영성과

1. 고충민원 접수 · 처리 현황 / 20

- 고충민원 처리 현황 / 20

- 고충민원 분야별 현황 / 21

- 3년간 고충민원 분야별 현황 / 22

2. 고충민원의 위원회 처리 목록 / 23

- 고충민원 처리 결과 요약 / 23

- 고충민원 사례 / 24

3. 고충민원의 접수 및 사무국 처리 목록 / 78

4. 위원회 주요활동 / 80

III 부록

강릉시위원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94

강릉시위원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10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110

I

위원회 운영개요

도입배경

연혁

위원회 소개

기능 및 권한

민원 처리절차

도입배경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역사·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월한 지리적 특성상 개발과 보존의 공생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계기로 각종 SOC, 대규모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 추진이 환경문제,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분쟁으로 확대되어 그동안 잠재된 행정에 대한 불만 표출로 이어져 민원의 성격도 복합·다양화되는 추세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행정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상충적인 이해와 관점을 소통과 완충의 조정역할로 갈등관리를 최소화하고, 시민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운/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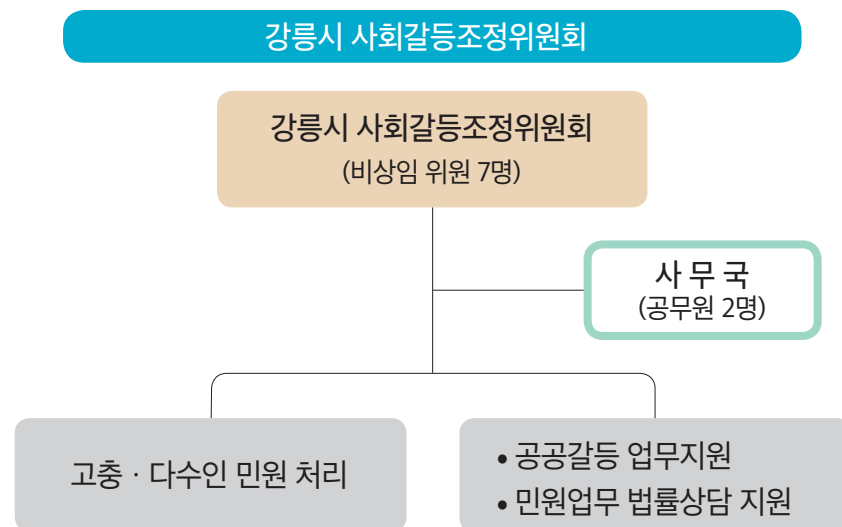
연혁

- 2018. 08. 20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운영계획 수립
- 2018. 11. 14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2018. 12. 27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19. 01. 21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운영
- 공무원 2명 파견
- 2019. 05. 07 제1기 위원회 구성(출범) : 위원 7명(비상근)
- 2020. 04. 07 김진 위원 위촉
- 2021. 06. 03 제2기 위원회 구성(출범)
- 위원 4명(재위촉), 위원 2명(위촉)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의회 및 집행기관과 독립된 합의제 위원회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7명의 위원이 민원에 대한 조사와 심의·의결을 담당하고 있다.
- 사무국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민원조사 및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강릉시 소속 공무원이 파견되어 운영하고 있다.



>> 위원 자격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위원 임기

- 위원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1기 위원임기 : 2019.5.7. ~ 2021.5.6.
 - 제2기 위원임기 : 2021.6.3. ~ 2023.6.2.

임기만료 위원			2021년 위촉사항		
만료일자	위원명	위촉구분	위촉일자	위원명	위촉구분
'21.5.6.	고광록	신규	'21.6.3.	고광록	연임
	최승용	신규		최승용	연임
	김규수	신규		장분성	연임
	심지현	신규		윤도현	연임
	장분성	신규		심재범	신규
	윤도현	신규		최정경	신규

>> 위원회 회의

- 정례회 매월 1회,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현황 (2021년 12월 기준)

	위원장 고 광 록	▪ 現 율곡법무법인 변호사 ▪ 前 강릉시청 고문변호사 ▪ 위촉기간 : 2021.6.3. ~ 2023.6.2.
	위원 최 승 용	▪ 現 명진건축사사무소 건축사 ▪ 現 강릉시건축사협회 회계감사 ▪ 위촉기간 : 2021.6.3. ~ 2023.6.2.
	위원 장 분 성	▪ 前 강릉시 보건소장 ▪ 위촉기간 : 2021.6.3. ~ 2023.6.2.
	위원 윤 도 현	▪ 現 강릉생명의 숲 사무국장 ▪ 現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 사무처장 ▪ 위촉기간 : 2021.6.3. ~ 2023.6.2.
	위원 김 진	▪ 現 법무법인 지향(강릉) ▪ 現 고용노동부 고문변호사 ▪ 위촉기간 : 2020.4.7. ~ 2022.4.6.
	위원 심 재 범	▪ 現 청암합동법률사무소 ▪ 위촉기간 : 2021.6.3 ~ 2023.6.2.
	위원 최 정 경	▪ 現 최정경 법률사무소 ▪ 위촉기간 : 2021.6.3 ~ 2023.6.2.

위원회 기능 및 권한

>> 관할

- 강릉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또는 출연기관

>> 주요 기능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 불합리한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집단민원·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 및 합의
-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상담 및 안내
- 위원회 활동 관련 홍보·교육
- 위원회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주요 권한

- 민원 조사 : 관련 부서 설명 또는 자료 제출 요구
- 권고 및 의견표명 :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권고, 의견표명을 통한 문제 해결
- 감사의뢰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부서 감사의뢰
- 조사결과 보고 및 공표 : 고충민원 처리현황, 처리결과 등에 대해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공표

민원 처리절차

강릉시 및 그 산하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고충 민원을 처리한다.

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다수인 민원	다섯 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사회갈등	강릉시가 공공정책(자치법규 제·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포함)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

>> 민원의 신청 및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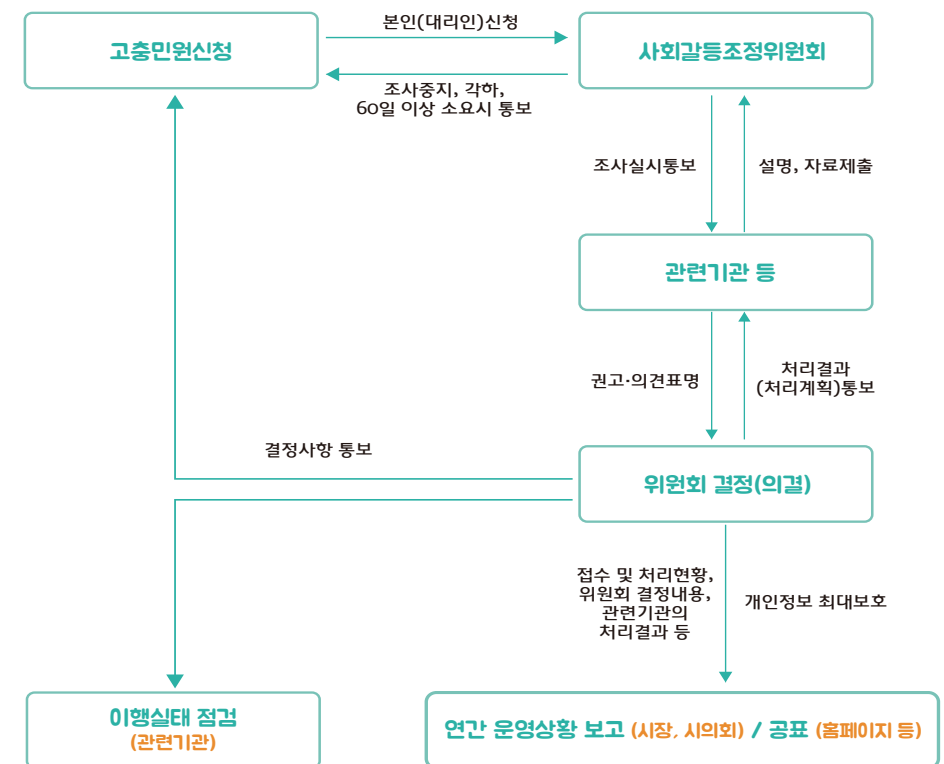
- 누구든지(재한 외국인 포함)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 이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민원의 신청은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 가능.
- 접수된 고충민원의 조사기간은 60일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신청인 등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 기간을 통지. 사회갈등조정 의 경우 사안에 따라 조사 기간 변경 가능.

>> 민원처리 예외대상 (조례규칙 제5조)

민원의 각하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가 진행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이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 등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 민원처리 흐름도



>> 위원회 결정유형 (10가지)

- 01**
시정권고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02**
의견표명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03**
제도개선 권고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04**
제도개선 의견표명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05**
합의 권고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 06**
조 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07**
기 각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 08**
각 하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09**
이 첩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경우
- 10**
심의안내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II

위원회 운영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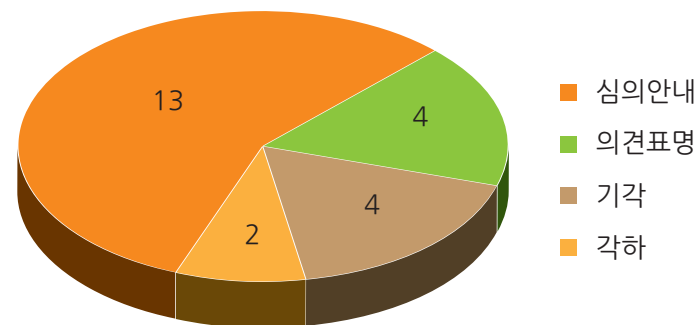
고충민원 접수 · 처리 현황

고충민원의 위원회 처리 목록

위원회 주요활동

고충민원 접수 · 처리 현황

>> 고충민원 처리 현황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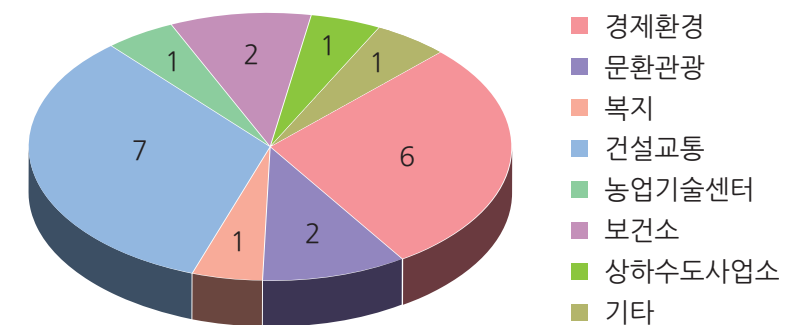
합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	심의안내	이송
23	-	4	4	2	13	-
100(%)	-	17.4	17.4	8.7	56.5	-

※ 처리건수 : 민원의 종결일자(2021년 내)기준

-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총 21건의 고충민원 등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이 중 8건은 위원회 상정 및 의결을 통해 처리하였고, 나머지 13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사무국에서 즉시 답변하여 처리 완료하거나 소관 부서를 안내하였으며, 사인간의 분쟁과 같이 우리 위원회가 다룰 수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 및 제도 등을 안내하였다.

- 2021년도에 21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었으나 위원회 결정유형이 23건으로 나온 것은 위원회에 상정, 의결한 민원 중 2건의 민원에서 일부각하, 일부의견표명과 일부기각, 일부의견 표명이 복합적으로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 고충민원 분야별 현황 (2021년)



합계	행정	경제환경	문화관광	복지	건설교통	농업기술	보건	상하수도	기타
21	-	6	2	1	7	1	2	1	1
100(%)	-	28.5	9.5	4.8	33.3	4.8	9.5	4.8	4.8

- 2021년 위원회와 사무국이 처리한 민원의 분야별 현황을 보면 건설교통부분이 7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경제환경분야가 6건(28.5%)이며 문화관광분야와 보건분야가 각 2건(9.5%)이며 복지분야, 농업기술분야, 상하수도사업분야 그리고 기타가 각각 1건(4.8%)순으로 나타났다.

>> 3년간 고충민원 분야별 현황 (2019년 ~ 2021년)

구분	합계	행정	경제 환경	문화 관광	복지	건설 교통	농업 기술	보건	상하 수도	기타
건수	71	3	10	5	8	25	3	2	3	12
비율(%)	100	4.2	14.1	7	11.3	35.2	4.2	2.8	4.2	17
2019	23	1	1	1	1	11	1	-	2	5
2020	27	2	3	2	6	7	1	-	-	6
2021	21	-	6	2	1	7	1	2	1	1

- 최근 3년간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처리한 분야별 현황을 보면 건설교통분야가 35.2%, 경제환경분야가 14.1%, 복지분야가 11.3%, 행정분야와 농업기술분야 그리고 상하수도사업분야가 4.2%, 보건분야 2.8%와 기타가 17%로, 경제환경분야와 도로건설분야의 고충민원이 전체 민원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 그리고 고충민원의 분야별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을 보면 경제환경분야가 3건, 보건분야가 2건 증가 외 나머지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복지분야가 6건에서 1건으로 5건이 감소하여(-83%)하여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고충민원의 위원회 처리 목록

>> 고충민원 처리 결과 요약

연 번	주요내용	소관부서 (피신청인)	처리결과
1	주문진읍 ○○리 산○○○-○번지 소나무고사 및 불법 벌목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피해보상 신청	기업지원과	각하, 의견표명
2	○○1차(3단지) 분양전환관련 민원	주택과	기각
3	강릉 남대천 생태하천화와 강릉○○발전소 재가동 동시해결 신청	강릉시	기각, 의견표명
4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신청	산림과	기각
5	○○지구 공동주택건축관련 주민의견 수렴요청	도시과	의견표명
6	반복적 악성민원에 의한 집중단속으로 인한 영업방해	질병예방과	기각
7	강릉시 교동 ○○○-○번지 등기소유자의 남문동 무번지를 남문동 ○○번지로 경정요청	도시과	각하
8	남대천 생태하천화와 강릉○○발전소 재가동 문제 재심의 요청	강릉시	의견표명

>> 고충민원 사례

주문진읍 ○○리 산○○○-○○번지 소나무고사 및 불법 벌목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피해보상 신청

민원 신청내용 요약

-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접지의 소나무고사 및 불법벌목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피해보상 신청

| 결정개요 |

- 민원표시 : 제○호, 주문진읍 ○○리 산○○○-○번지 소나무고사 및 불법벌목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피해보상 신청
- 신 청 인 : ㄸ○○ (강릉시 ○○○로 ○○○번길 ○○, ○○○동 ○○○호)
- 피신청인 : 강릉시(기업지원과)
- 주 문
 1. 강릉시 기업지원과에 주문진 제2농공단지조성사업관련 침수피해에 대한 타당한 해결을 위하여 해당토지매수를 회계과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각하한다.
- 결정일자 : 2021.4.2.

| 이 유 |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강릉시 주문진읍 ○○리 산○○○-○번지 임야 소유주이며 주문진 제2농공단지에 접해 있는 신청인 소유임야의 하단부 약 100평이 제2농공단지 건설로 인한 매립으로 농공단지 지면보다 낮게 매립되었고 농공단지와 토지경계표시로 독을 만들어 배수가 되지 않아 비가 내리면 습지로 됩니다. 특히 올해 여름 50여일의 장마로 소나무가 현재 5그루가 고사하였고 소나무 4그루(직경25cm~30cm)는 임야소유인과 강릉시 산림과의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벌목되었습니다.

나. 해당지역의 소나무가 고사하는 원인은 배수구가 없이 농공단지 매립지 지면보다 산 아래 지역이 낮

게 매립되어 비가 내리면 발목까지 잠기는 습지가 되어 소나무가 고사되는 것이 당연한데 기업지원과 담당자는 비가 많이 왔던 지난여름에 물이 가득 차있던 때의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면 연일 가뭄으로 몸살을 앓는 이 시기에 비에 잠겨있는 습지로 된 사진자료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다. 한편 산림과에 요청하여 담당자와 외부전문가인 나무의사가 현장조사(2020년 12월18일)한 결과 소나무간의 매립(흙을 약 30cm정도 묻혀있는 것을 캠핑삽으로 퍼내서 확인)이 고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장마로 습지가 되어 수분이 과다하면 고사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신청인은 이러한 나무의사의 조사의견서가 첨부된 산림과의 답신을 요청하였으나 나무의사는 앞으로 이어질 관공서와의 업무관계로 조사의견서를 써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조사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은 채 현장시료를 채취하여 전문조사기관에 다시 원인분석을 의뢰하여 결과 통보하겠다는 등 명확하지 않은 미흡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라. 침수로 인하여 고사된 소나무 중 4그루가 소유자와 산림과의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벌목된 것에 대하여 기업지원과 담당자는 본인이 재직시에는 벌목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계속 책임회피를 하는 것은 고사목들을 소유자에게 은폐하려고 한 소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 결국 농공단지 조성시 잘못된 매립으로 인한 소나무 고사 및 불법벌목으로 신청인 소유의 임야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였음에도 담당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는 계속된 책임회피를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 및 보상을 요구합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수목고사에 대한 보상요구 관련

- 1) 강릉시 주문진읍 ○○리 산○○○-○번지 고사목 원인분석에 대하여 산림과에 의견요청한 바, 해당 토지는 자연적으로 일조량이 다소 부족한 구역에 포함되어 수목이 성장하는데 열세의 여건으로서, 수목의 고사원인에 대해서는 수목간 수관경쟁으로 인한 자연도태, 수목의 노후화, 재선충병 외의 병충해로 인한 열세목의 고사 등 자연적 요인과, 토지복토로 인한 배수불량 등 자연적, 인위적 인자가 상존함에 따라 수목 고사 원인을 단일한 인위적 요인으로 특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산림과에서 회신한 바
- 2) 주문진 제2농공단지 부지조성 공사로 인하여 주문진읍 ○○리 산○○○-○번지 피해 사실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기업지원과-739, 2021. 1.26.).
- 3) 민원인의 요청하신 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토지 수용이 불가하며, 민원인의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주문진읍 ○○리 산 ○○○-○번지 일원에 정비공사를 적극 검토하

여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기업지원과-2440, 2021. 3. 19.).

나. 불법벌목에 대한 보상요구 관련

신청인 소유의 소나무 벌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에 벌목 행위자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기업지원과-739, 2021.1.26.).

3. 사실관계

● 기업지원과

- 2020. 12. 07. 민원소청서 제출
- 2020. 12. 10. 현장조사
- 2020. 12. 15. 민원소청에 대한 1차 회신
- 2020. 12. 28. 민원인과 기업지원과장 면담
- 2021. 01. 06. 민원소청에 대한 2차 회신

● 산림과

- 2020. 12. 14. 민원소청서 제출(수목고사원인규명요청)
- 2020. 12. 18. 현장조사
- 2020. 12. 22. 민원회신(전문조사기관에 의뢰예정)
- 2020. 12. 23. 시료채취(산림과)
- 2020. 12. 24. 소나무재선충병 검경의뢰 요청(산림과→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 2021. 01. 04. 소나무재선충병 검경결과 회신(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산림과)
- 2021. 01. 05. 관련부서 의견요청에 대한 회신(산림과 → 기업지원과)

● 사회갈등조정위원회

- 2021. 01. 13.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방문하여 상담
- 2021. 01. 14. 사회갈등조정위원회 1차 현장조사

4. 관계법령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위원회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복합된 내용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달리할 수 있다.

1. 시정권고 :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 · 사실행위 · 부작위 등이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 · 변경 · 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2. 의견표명 :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 · 사실행위 · 부작위 등이 위법 · 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도개선 권고 :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도개선 의견표명 :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합의 권고 :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6. 조정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각 :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8. 각하 :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9. 이첩 :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경우
10. 심의안내 :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민원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원 ·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 · 알선 · 조정 ·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 · 결정 · 재결 · 화해 · 조정 ·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 등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5. 이 사건 신청의 위법·부당여부

가. 수목고사관련 보상요구에 대한 판단

- 1) 신청인의 주장은 제2농공단지조성으로 인한 매립공사로 인접지인 신청인의 토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며 그 결과 비가 오면 신청인 소유의 해당토지가 침수되어 소나무가 고사하였다고 주장하고
- 2) 피신청인은 해당지 수목고사의 원인에 대하여 자연적, 인위적 인자가 상존함에 따라 수목 고사 원인을 단일한 인위적 요인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산림과의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주문진 제2농공단지조성 부지조성 공사로 인하여 피해 사실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기업지원과-739, 2021.1 26.)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민원인의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주문진을 교항리 산 287-8번지 일원에 정비공사를 검토하겠다(기업지원과-2440, 2021.3 19.)는 입장인 바
- 3) 먼저 해당 수목은 소나무로 소나무의 생태특성은 양성의 나무이기에 건조하고 지력이 약한 곳(척박한 곳)에서 견디는 힘이 강하다는 점이 있고
- 4) 다음으로 침수의 원인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토지는 현황상 후면으로 비탈진 사면이 있고 정면에는 매립공사로 지면이 높아진 제2농공단지부지가 있는 관계로 강우시 우수가 양쪽으로부터 흘러내려 정체될 수밖에 없으며 설령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농공단지쪽에서 흘러내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제2농공단지조성 매립공사로 인하여 후면 비탈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빗물이 신청인의 토지에 이어 농공단지쪽을 지나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침수가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 5) 따라서 수목고사원인에 대해 판단하면 피신청인은 수목고사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원인을 주장하며 특정할 수 없다 주장하지만 본 신청사건의 수목고사의 원인은 소나무의 생태적 특성에 비추어 침수가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며 신청인 토지의 침수는 제2농공단지조성 매립공사에 요구되는 적절한 배수로 설비가 확보되지 못하였음에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 6) 다음으로 피해회복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고사된 소나무의 피해배상 및 재발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는 방법, 둘째, 피해토지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 할 것이다. 먼저 고사목의 피해배상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는 방법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국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추후관리시 발생하는 비용문제, 현재의 지형적, 구조적 상황에 맞는 공사방법 등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해당토지의 매수비용을 상회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7) 그렇다면 강릉시가 이를 매수하여 제2농공단지주변을 녹지,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추후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강릉시의 재정적 효율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매수와 관련하여서 현재 제2농공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피신청인인 기업지원의 특별회계로 직접 매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일반회계로의 매수를 회계과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불법벌목관련 보상요구에 대한 판단

- 1)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는 민원에 대한 각하사유로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2) 신청인은 침수로 인해 고사된 소나무중 4그루가 소유자 및 산림과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벌목된 것에 대해 기업지원과의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해 기업지원과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에 벌목 행위자를 단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는 바
- 3)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불법벌목에 대한 사실관계의 규명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수사에 관한 절차라 할 것이므로 불법벌목과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인의 주장 중 가. 수목고사에 대한 보상요구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는 강릉시 기업지원과에 주문진 제2농공단지조성사업관련 침수피해에 대한 타당한 해결을 위해 해당토지매수를 회계과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고 나. 불법벌목에 대한 보상요구와 관련한 신청인의 주장은 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차(3단지) 분양전환관련 민원

민원 신청내용 요약

- ○○아파트의 분양전환 후 분양대상자의 자격범위

| 결정개요 |

- 민원표시 : 제○호, ○○1차(3단지) 분양전환관련 민원
- 신 청 인 : 임차인 대표회의
- 피신청인 : 강릉시(주택과)
- 주 문 : 신청인의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한다.
- 결정일자 : 2021. 4. 2.

| 이 유 |

1. 신청원인

- 가. 강릉시와 (주)○○과의 분양승인과 관련한 소송에서 (주)○○이 패소하였고 이후 ○○측에서 헌법소원에서도 패소하여 현재 입주인 495세대중 180세대만 분양한다 하고 나머지 315세대는 미분양 상태입니다.
- 나. 당초 5년 경과후부터 분양신청하라고 하여 ○○측에서 분양 찬성 · 반대 설문조사하여 주민 80% 이상이 분양 찬성하였으나 입주인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통보없이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일방통보하였습니다.
- 다. 국토교통부에 질의한바 임차인만 무주택자이면 분양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2020.06.30.) 또한 ○○영업소 대표번호에서도 임차인만 무주택자이면 가능하고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라. 상기 내용과 같이 (주)○○이 법적문제에서도 패하였고 또한 ○○1차아파트 옆 2차아파트와 5차아파트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분양하였는데 1차 아파트만 분양 안해주는 것은 20년 동안 기다린 입주인들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 마. ○○1차아파트 495세대중 완전무주택자 180세대만 분양하고 나머지 315세대는 분양안된다고 하는 바 계약자만 무주택자이면 분양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차 임대아파트 현황 관련

강릉시 교동 ○○1차아파트는 총 495세대로서 일반공급대상 20세대를 제외한 우선공급대상이 475세대이며 우선공급대상 475세대중 137세대는 분양승인 후 임대세대로서 우선분양전환 미대상 세대이고 나머지 358세대중 현재 218세대는 분양전환이 완료되었고 결국 140세대에 대해 임차인 대표회의측과 (주)○○주택간에 이견이 있는 상태이다.

나. ○○1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추진 관련

신청인의 분양전환신청(2016.10.28.)에 따른 강릉시의 분양전환승인처분(2018.4.24.)에 대해 (주)○○주택은 분양전환승인처분효력정지소송(2018.7.13.~2018.10.16.) 및 분양전환처분무효확인소송(2018.7.13.~2019.12.11.)을 제기하고 해당 재판의 전제인 구 임대주택법에 대하여 헌법소원(2019.7.10.~2020.3.26.)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소원은 합헌결정으로, 행정소송은 (주)○○주택의 패소로 분양전환승인처분이 확정되었다.

다. 분양전환이행과 관련

- 1) 분양전환이행과정에서 분양전환대상자의 자격이 문제가 되었으며, 특히 무주택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대법원 판결은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과 같은 효력이 없으나 법령해석에 있어 판결을 존중하여 본 공문 수신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선착순 모집한 경우에는 판결 결과에 따라 제도를 운영할 필요 있으며, 다만 본 공문수신전 임차인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방지를 위해 기존과 같이 임차인만 무주택자인 경우 분양전환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의 권고(국토교통부 주거정책과-984, 2018.5.14.)대로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 2) (주)○○주택은 임대주택 우선분양자격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조 공문은 권고사항으로 판단하고 “임차인에 속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을 의미한다는 대법원판결(2014다 75462, 2015.10.29.)을 적용하여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민원대응 및 추진 관련

강릉시는 분양전환을 거부하는 피신청인에 대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등을 거쳐 분양전환승인처분을 하였고 이후 분양전환대상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주장대로 국토교통부의 권고내용인 임차인만 무주택자이면 자격을 인정해줄것과 분양전환가격에 대해서도 분양전환가격이하로 매각할 수 있도록 (주)○○주택 본사 및 강릉영업소와 지속적으로 방문 및 협의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의 민원은 기본적으로 (주)○○주택과의 민사에 관한 문제로 강릉시의 역할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3. 사실관계

- 2016.10.28. ○○1차아파트 분양전환 요청(○○1차→강릉시)
- 2016.11.24. 임대사업자의 지위, 재산권 침해로 분양전환불가 회신(○○)
- 2016.11.30. ○○1차아파트 분양신청 재협조 요청(강릉시→○○)
- 2017. 2.14. 분양전환 시점(6개월 경과시점, 경과 후) 관련 질의 회신
 - 국토교통부 : 12년이 지났다하더라도 임차인(총수의 3/2이상 동의시)이 직접분양전환 신청 가능 회신
- 2017. 5.19.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신청서 제출(임차인 대표회의)
- 2017. 5.24. 임대주택 분양전환신청서 접수에 따른 사업자 의견 요청
- 2017. 5.25. ○○1차아파트 분양전환관련 감정평가업체선정 요청
- 2017. 7. 4. 분양전환 관련 감정평가업체 선정 연기요청 접수(임차인대표회의)
- 2017. 9. 4. 감정평가 2개 업체선정([주]○○○감정평가, [주]○○○○감정평가)
- 2018. 4. 2. 임차인대표회의 및 입주자 약 20명 민원방문
 - (주)○○주택으로 강릉○○1차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산정하여 제출된 분양가격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전 분양전환 가격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승인 예정
- 2018. 4. 5. 강릉○○1차아파트 분양전환 가격결정 관련 사전 의견 조회
- 2018. 4.18. 강릉1차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결정 관련 이의신청(○○)
- 2018. 4.24.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처분(강릉시)
- 2018. 7.13.~ 2018.10.16 분양전환승인처분 효력정지 소송[○○]
 - 1심 강릉시 승소(2018. 8.22).
 - 2심 강릉시 승소(2018. 10.16). - 항고신청 기각
- 2018. 7.13.~ 2019. 6.14 분양전환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 1심 원고청구 기각 (2019. 6.14)
- 2019. 6.25.~ 분양전환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2심)[○○]
 - 분양전환승인처분 무효확인 기각에 따른 항소
- 2019. 7. 10. (주)○○의 헌법소원심판 제기
 - 구 임대주택법상 시장 등 승인조항및 임차인 분양전환신청조항의 헌법위반여부
- 2019.11.12. ○○본사 협의 위한 방문(강릉시→○○)
 - 분양전환승인처분 무효확인'행정소송 취하 등 분양전환 계획은 없는지 및 주민요구 사항 협의 (총당금, 보수공사 시설물유지관리 관련)

- 취하계획은 없으며, 행정소송 외 헌법소원 심판 결과에 따라 업무추진
- 보수공사 및 시설물유지관리 등은 조속한 처리가 되도록 노력 할것임.
- 2019.11.27. 분양전환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2심) 변론예정 (10.2에서 변경)
- 2019.12.11. 분양전환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2심) 승소(항소기각)
- 2020. 1.10. 강릉시 교통 ○○1차아파트 분양전환 이행 요청
- 2020. 4.1. 헌법소원심판(합헌결정)종결에 따른 분양전환 이행 요청 (강릉시→○○ 본사)
- 2020. 5.11. 남원 ○○2차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 종결이후 분양전환 진행예정
- 2020. 5.12. 교통 ○○1차 분양전환 이행 촉구요청(강릉시→○○본사)
- 2020. 5.29. 분양전환 이행 촉구요청에 대한 회신(○○ 본사→강릉시)
 - 우선분양 대상자 확인후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분양전환 진행 예정
- 2020. 6.16. 분양전환에 따른 업무 협조요청(강릉시→○○ 본사)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984(2018. 5.14.)호관련 공문 수신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선착순 입주자로 계약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방지를 위해 기존과 같이 임차인만 무주택자인 경우 분양전환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문서 시달에 따른 임차인들의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분양전환이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 2020. 6.30. 주택소유 전산검색의뢰(○○ 본사→강릉시)
 - 분양전환을 위한 주택소유여부 조회요청(강릉시→국토교통부)
 - 분양전환을 위한 주택소유여부 조회결과 회신(국토교통부→강릉시→ ○○)
- 2020. 8.11. 임차인대표회의(회장 차○○) 강릉시 방문
 - 입주자 모집당시 미분양으로 인한 임차인만 무주택자인 경우 분양자격을 인정한 것처럼 인정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 2020. 8.12. 강릉○○영업소 소장 면담(주택과장외 1인)
- 2020. 8.13. 국토교통부에 민원신문고를 통한 질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984(2018. 5.14.)호 관련 임대사업자 측은 국토교통부의 해당 공문은 권고사항이며 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판례를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며,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검토에 있어 국토교통부 공문에 따라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인 경우로 해석가능한지 또한 국토교통부의 판단이 법적구속력을 가질수 있는지 답변 부탁.
- 2020. 9. 2. 국토부회신: 2018. 5. 14.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선착순 입주자로 계약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인만 무주택자인 경우 분양 전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
- 2020. 9. 4. 분양전환관련 재협조요청(강릉시→○○주택)

- 2020. 9. 10. ○○1차임대아파트 분양전환관련 사항알림(강릉시⇒○○임차인대표)
- 2020.11. 9. 강릉○○1차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회장 최상섭 외2명) 면담
- 2020.11. 9. 강릉○○영업소 소장 면담(주택과장외 1인)
- 2020.11. 26. 강릉시장 면담
- 2020.12. 11.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민원신청서제출 및 상담
- 2021. 2. 24.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서울 ○○본사방문

4. 관계법령

【구 임대주택법 (약칭:민간임대주택법)】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자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3.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5.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약칭: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9조(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의 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약칭: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②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제3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와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은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11조 및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임대주택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위원회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복합된 내용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달리할 수 있다.

1. 시정권고 :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2. 의견표명 :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도개선 권고 :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도개선 의견표명 :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합의 권고 :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6. 조정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각 :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8. 각하 :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9. 이첩 :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경우
10. 심의안내 :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민원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원 ·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 · 알선 · 조정 ·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 · 결정 · 재결 · 화해 · 조정 ·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 등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5. 이 사건 신청의 위법 · 부당여부

가. 신청인의 신청은 신청인인 ○○1차 임차인대표회의와 (주)○○주택간에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따른 분양전환이행과정에서 문제되는 분양전환대상자의 자격에 대하여 피신청인인 강릉시 주택과에 민원을 해소해 달라는 취지이며 분양전환대상자의 자격에 관한 문제는 결국 사인간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문제로 피신청인인 강릉시 주택과에 과연 이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 제7호는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할 것이나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당사자의 이해와 협력을 토대로 합의나 조정을 위하여 각하하지 않고 심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당사자 특히 (주)○○주택측이 재판을 통한 법적인 처리방침을 고수하여 합의나 조정을 통한 해결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또한 민원처리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이제 위법 · 부당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로 한다.

다. 신청인의 신청은 분양전환대상자의 자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권고(국토교통부 주거정책과-984, 2018.5.14.)대로 적용하여 신청인들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강릉시 주택과에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강릉시 주택과는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대해 신청인이 요구

하는 내용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다만 현실적으로 분양전환승인과 관련한 소송에서부터 현재까지 (주)○○주택에 대한 이해와 양보를 요청하는 등 별도의 노력을 진행하여 왔음이 인정된다.

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2014다 75462, 2015.10.29.)을 살펴보면

- 1) 먼저 무주택자의 자격에 대하여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을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로 한정하고 있는데(제4조 제2항 제1호), 여기서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제2조 제9호)고 명시하고 있으며
- 2) 이러한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 관련 법령 및 구 주택공급규칙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임대주택법 및 관련 법령은 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을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주’로 엄격히 한정함과 동시에 입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은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마. 소결

- 1) 신청인과 (주)○○주택의 관계는 사인간 법률관계라는 점에서 피신청인인 강릉시 주택과가 실효적인 행정처분을 할 아무런 권한이나 의무는 없으며 다만 당사자의 합의나 조정을 통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사안처럼 당사자 일방이 합의나 조정에 대한 거부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 이러한 해결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 2) 그렇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대법원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판결과는 다른 내용으로 무주택자의 자격을 인정하라고 (주)○○주택에 요구하기에는 피신청인 강릉시 주택과의 권한과 기능에 일정한 한계가 있기에 이러한 취지의 처분을 하지 않는 피신청인을 위법 · 부당하다 할 수는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강릉 남대천 생태하천화와 강릉○○발전소 재가동의 동 시해결 신청

민원 신청내용 요약

- 강릉○○발전소 활용방안에 대하여 토론회나 공청회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신청

| 결정개요 |

- 민원표시 : 제○호, 강릉 남대천 생태하천화와 강릉○○발전소 재가동의 동시해결 신청
- 신 청 인 : ○○○ 외 2인(강릉시 ○○길 ○○번길 ○○, ○○○동 ○○○○호)
- 피신청인 : 강릉시
- 주 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수질개선에 대한 실증적 자료 및 저류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등 자료 제출시 재논의 할 수 있음을 의견표명한다.
- 결정일자 : 2020. 7. 10.

| 이 유 |

1. 신청원인

가. 강릉의 젓줄 남대천은 지금 생명을 잃었으며 특히 두산보(강릉교)아래의 하천생태 상황은 건천화 현상과 오염 및 악취로 시민이 접근하기조차 어렵고 시시때때로 물고기가 떼로 죽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강릉시가 아름다운 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좀 더 자족적이고 큰 도시로 발전하려면 남대천을 충분한 물이 흐르는 예쁜 생태하천으로 되살리는 것이 필수 과제이다.

나. 남대천이 죽어있는 원인은 물 부족과 오폐수의 유입 때문이다. 오폐수의 유입은 강릉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고 앞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물 부족은 강릉시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오봉저수지에서 남대천 물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오봉저수지 물의 절반 이상은 강릉시민의 생활용수로 쓰이고 있다. 사천천에서 물을 가져다 쓴다고 하지만 그럴 경우 사천천의 물 부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동해안은 산맥이 바다와 근접해 있어 원천적으로 용수공급이 부족하다. 앞으로 물 부족은 지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다. 천만다행으로 강릉남대천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행운의 길이 있다. 강릉○○발전소

를 활용하는 길이다. 2001년 강릉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중단시킨 발전소 발전을 수질과 수온의 개선을 전제로 재가동하도록 하고 그 발전방류수로 남대천 물부족을 깨끗이 해결하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발전을 되살려주고 강릉시는 남대천의 물 부족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나라에도 유익하고 강릉시에도 유익하며 한수원에도 유익한 아름다운 상생의 기회이다.

라. 지금까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상생의 길이 열리지 않았던 것은 강릉시민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이의 불신 때문이었다. 한수원의 수질과 수온개선의 의지를 강릉시민들이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너무 밝아져 있다. 이 정도의 불신을 해소할 협정기법과 수질개선기술 및 수질감시기술은 우리나라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불신조차 해소하지 못한다면 강릉시민의 자존심에 상처가 될 수 있다.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강릉시의 사회적 정책과제이다. 하루라도 빨리 강릉남대천의 물 부족과 수질문제가 해결되어 충분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며 꼭저구와 은어가 떴지어 펄떡이는 한국 최고의 생태하천이 또 하나 탄생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2. 사실관계

[경과과정]

- 1991. 1. 도암댐 준공 및 발전개시
- 2001. 3. 남대천 수질오염 민원제기로 발전방류 중단
- 2005.12.21. 국무총리실 국정현안조정회의
 - 홍수조절용댐으로 전환 / 수질개선조치 마련
 - 수질개선효과 검토후 발전재개등을 추후 논의
- 도암댐 문제해결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2009.12.30.
 - 체결당사자 : 지식경제부, 강원도, 강릉시, 영월군, 정선군, 한수원
 - 주요내용
 - 수질검증위원회 구성 : 2010.4.8. ~ 2012.5.30.(총 10차)
 - 수질검증기간 : 1년
 - 수질검증기준 : 환경부 수질기준 → 환경부고시 제91-35호
 - 상류는 1등급, 하류는 2등급
 - 수질검증결과에 따라 방류 여부 결정
 - 수질검증결과 : 부적합
 - 수질개선시설 설치(도암댐 입구) : 2010.7 ~ 2010.10.

- 시설내용 : 3FM(유연성 섬유사 여과장치)
- 한수원 한강수력본부 사업자등록증 반납 : 2017.2.28.

[사회갈등조정위원회]

- 2021. 3.15. 민원접수
- 2021. 4. 2. 4월 정례회 안건 상정 및 논의:
- 2021. 6.11. 6월 정례회 논의
- 2021. 6.23. 6월 임시회(제1차) 논의, 민원신청인측 참석하여 설명
- 2021. 6.30. 6월 임시회(제2차) 논의, 반대측 참석하여 설명
- 2021. 7. 9. 7월 정례회 논의, 찬성측 참석하여 설명

3. 판 단

- 1) 신청인은 신청원인이나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남대천의 건천화 및 오염과 악취로 인한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발전방류가 중단되었던 강릉OO발전소의 재가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 등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강릉시에 요청하고 있는 바
- 2) 신청인의 주장 및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강릉OO발전소의 남대천 방류는 1991년 발전방류를 시작한 이후 남대천의 수질오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2001년 발전방류가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그렇다면 수질개선문제는 남대천의 오염과 악취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도 발전방류가 필요하다는 신청인의 주장 및 2001년 당시 발전방류가 중단된 이유인 수질오염상황의 해소가 모든 논의의 시작이라며 발전방류를 반대하는 주장을 판단하는데 있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 4) 이와 같이 공론화의 전제조건으로 수질개선가능성 및 이러한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저류지 시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가. 수질개선 관련

- 1) 신청인은 천연광물질인 제올라이트를 사용하여 녹조현상을 유발하는 인(P)과 수질오염의 원인인 부유물질(SS)등이 미세다공물질에 이온교환으로 흡착하여 인(P)과 부유물질(SS)의 응집으로 무거워진 제올라이트가 바닥에 침강하여 수질개선 작용을 한다고 하며 이러한 방법은 이미 국내외 많은 사례에서 그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2) 또한 신청인은 본 위원회에 방류여부결정이 아니라 강릉시민의 알권리를 근거로 이에 대한 토

론회나 공청회와 같은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며 2001년 방류중단 이후 20년이 라는 꽤 긴 시간이 경과한 현재상황은 당시와는 달리 수질개선기술의 발전 등 많은 사정이 변경되었기에 언제까지나 방류중단상태를 지속할 수는 없으며 이제는 방류결정이든 발전소 폐쇄 결정이든 종국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3) 한편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2001년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방류중단 이후 2005년 ‘국무총리실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거쳐 2009년 ‘도암댐 문제해결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서 수질기준 2등급 충족을 전제로 방류한다고 합의하였기에 방류수질기준의 충족여부는 당해 민원의 논의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사항이라 할 수 있다.
- 4) 비록 본 위원회는 발전방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아니며 권한도 없으며 또한 발전방류결정여부와 상관없이 이에 대한 공론화의 장만이라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신청인의 주장이지만 신청인의 민원에 대하여 결정하고자 함에 있어서 수질개선가능성이나 이를 위한 처리 시설에 관한 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발전방류여부를 놓고 지난하고 첨예한 갈등상황을 겪었던 지난날에 비추어 보면 비록 신청인이 주장이 방류여부결정이 아니라 공론화의 장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성은 결코 작지 않다 할 것이다.
- 5) 그렇기에 수질오염문제로 중단된 상태가 기술발전 등으로 인하여 해소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이 아니라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있어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공론화여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저류지시설 관련

- 1) 신청인 및 한수원은 수질개선을 위하여 성산면 오봉댐 하류 500미터 지점에 저류지를 건설하여 수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방류찬성측 주장에 따르면 방류시 1일 40만톤을 남대천으로 방류하겠다고 하는 바 이에 상응하는 수질개선처리시설은 대규모 시설이 예상된다 할 것이기에 이러한 시설의 구체적인 규모와 건설비용 및 시설유지관리비용의 소요액이나 자원조달방식 등 사업실현여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논의가 필요하다.
- 2) 이에 대하여 저류지시설사업은 엄청난 자원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므로 발전방류에 대한 일정한 가능성이 예측되어야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신청인 및 한수원은 주장하고 있으나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발전방류가 중단되었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본 위원회의 논의대상이 비록 발전방류여부가 아닌 공론화여부에 대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논의에는 신중한 접근을 위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 3) 그렇기에 수질개선사업을 위하여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시설인 저류지시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없이 저류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주장만으로는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수질개

선여부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다는 발전방류찬성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 4) 또한 발전방류찬성측 및 발전방류반대측의 각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한 바 발전방류결정 및 공론화과정에서 수질개선여부가 핵심적인 사항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첨예한 논쟁도 예상된다 할 것이다. 아울러 추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가급적이면 수질개선여부라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효율적인 공론화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신청인 등 방류찬성측이 주장하는 공론화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확대될 수 있다 하겠다.
- 5) 그리고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는 신속한 결정이 최우선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한편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는 바, 장기간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논의가 시작된 본 사안이야말로 신속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 6) 그렇다면 발전방류를 위한 공론화여부를 논의하는 본 위원회는 발전방류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엄격하고 구체적인 자료제출은 아니더라도 20여년의 시간동안 많은 사정이 변경되었기에 이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 그리고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민원처리기간내에 처리해야 하는 시간적 제한조건하에서 수질개선 및 저류지시설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본 사안의 경우 현재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공론화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며 공론화결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질개선에 대한 실증자료 및 저류지에 대한 소요예산 조달을 포함한 사업계획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인의 주장인 강릉 남대천 생태하천화와 강릉○○발전소 재가동의 동시해결을 위한 공론화 신청은 ‘기각’한다. 다만 수질개선에 대한 실증적 자료 및 저류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의 제출시 재논의 할 수 있음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유재산 유상사용 · 수익허가 신청

민원 신청내용 요약

- 피신청인이 2021. 7. 5. 신청인에 대하여 강릉시 ○○리 산○○○번지 유상사용 · 수익허가신청 불허통지를 철회하고 유상사용 · 수익허가라는 결정을 신청

| 결정개요 |

- 민원표시 : 제○호, 공유재산 유상사용 · 수익허가 신청
- 신 청 인 : ○○○○○○(주)(강릉시 강동면, ○○로 ○○○-○번지)
- 피신청인 : 강릉시(산림과)
- 주 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결정일자 : 2020. 9. 10.

| 이 유 |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2021년 6월 21일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리 산○○○번지(지적 8,628㎡/대부면적 2,694㎡)에 대하여 공유재산 유상사용 · 수익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21년 7월 5일자로 공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가 불허됨을 통지받아 이에 불복, 구제를 신청하게 되었다.

나. 강릉시 산림과 주장으로는 강릉시 모든 임야에 대한 공유재산 유상사용 · 수익허가신청은 공적인 목적 외에는 예외 없이 불가방침을 세우고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공유재산(임야)에 대해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산림담당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사용, 수익허가)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위 처분은 부당하다.

라. 불가 사유에 보면 신청인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공유임야의 기능을 저해하고 추후 강릉시 행정재산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불가하다고 주장한 바 위 주장은 불가사유에 대한 구차한 변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1) 공유임야의 기능 저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목만 임야이지 현 상태는 예전 골재 채취장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여 골재가 포설된 나대지이며 임야의 기능을 상실한 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바 임야의 기능저해라는 주장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불가 사유에 반박한다.
 - 2) 공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 신청면적은 신청부지면적 8,628㎡ 중 일부 2,694㎡를 사용함으로써 임야 훼손은 없을 뿐만 아니라 복구 시 임목 식재를 통해 임야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 3) 또한 추후 행정재산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불가 사유에서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신청인이 2018년도에도 신청한바 상기와 같은 이유로 불가통지를 하였던바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휴지 상태로 있는 것으로 볼 때 위 주장은 거짓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마. 국가 장려 사업인 광산개발을 추진(야적장)함으로써 지역주민 고용 창출효과와 유휴지에 대한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를 통한 지방세 창출, 지역주민의 광산 유치 염원을 통하여 기업과 마을의 상생협력 강릉시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으며 아울러 상당한 금액의 관외반출방지 및 지역장비활용으로 지방세 확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 바. 이에 본 신청인은 강릉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부당한 위 처분을 철회하고 허가를 구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강릉시 강동면 ○○리 산○○○번지(이하 산○○○번지라 한다.)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타 업체에 광산개발 적치장으로 유상사용허가된 적이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해당 사유지 옆 ○○리 산△△△번지 일원(이하 산△△△번지라 한다.)에서 광산개발을 하다가 당초 받은 산지전용허가에 대해 취소통보를 받았다. 주된 사유는 광산개발(석회석 채취)로 허가를 받고 사업계획변경없이 석회석을 골재로 반출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에 저촉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허가취소 결정계기는 인근 주민들의 사업 중단 요구 때문이었으며 소음과 비산먼지, 진동, 대형트럭의 난폭 운전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원인이었다. 또한 해당 업체는 강릉시의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에서 패소,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고 강릉시는 2013년에 11억 4천만원의 막대한 복구비를 청구하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산지관리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행정대집행으로 복구사업을 완료하였다.
-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였다.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었던 광산사업으로

해당 사유지를 야적장으로 다시 한번 허가해 준다면 산지복구에 들어갔던 복구비용과 노력도 한 순간에 무너질뿐더러 사업의 특성상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공공의 복리에도 맞지 않고 한번 허가해주면 중단하기 어려우며 원상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어 공유재산 유상사용을 불허했다.

- 다. 현재 사용·수익허가 신청지 인근에 태양광 패널이 50m 이내에 990kW 규모로 설치되어 있어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문제(분진으로 인한 피해)에 직면하여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내역을 받아보고 강릉시 담당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판단 기준이 과거의 판단기준과 동일하지 않다. 과거에는 그 당시의 허가기준에 따라 판단했을 것이므로 과거의 자료를 현재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다.
- 라. 신청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하면 불허가처분은 부당하다고 하였는데 같은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상복구 대상지이기 때문에 강릉시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고, 광산을 개발하는 한 해당 부지를 계속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다. 또한,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이바지하여야 하고 공유임야는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하는바, 추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조림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상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유상사용·수익허가는 불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산△△△번지외 2필지]

- 2011. 9. 15. 산지전용허가 취소 통보(주된 취소사유 : 사업계획변경 없이 석회석이 아닌 토석을 채취해 골재용으로 반출)

- 2011. 11. . 진정서 제출(○○ 1,2리 마을회 주민일동)
- 2012. 9. 25. 1심판결선고(강릉시 승소)
- 2013. 1. 15. 산지전용허가 취소 통보(사업중지)
- 2013. 6. 5. 항소심 판결(강릉시 승소)
- 2013. 8. 12. 복구비청구(1,452,071천원), 서울보증보험
- 2014. 10. 13. ~ 2015. 4. 20. 복구사업

[산○○○번지]

- 2012. 12. 31. 대부기간만료(2011. 9. 15. ○○○번지의 2필지에 대한 허가취소)
- 2017. 9. 18. 대부(사용허가)신청서 제출(서강자원개발㈜)
- 2017. 9. 29. 불허가처분(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
- 2021. 6. 21. 대부(사용허가)신청서 제출(서강자원개발㈜)
- 2021. 7. 5. 불허가처분(공유임야의 기능, 추후 강릉시의 행정재산 이용에 지장)

4. 관계법령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5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1조, 제42조

5. 판단

가. 신청인의 2021. 6. 21. 강동면 ○○리 산○○○번지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21. 7. 5. 불허가처분을 하며 그 사유로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신청에 따른 회신(산림과-12545, 2021. 7. 5.) 및 민원조사개시에 따른 회신(산림과-15497, 2021. 8. 24.)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4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1조, 제42조를 들어 불허가처분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다.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4항

- 1) 피신청인은 불허가처분의 사유중 하나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4항을 근거로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었던 광산사업으로 해당 시유지를 야적장으로 다시 한번 허가해 준다면 산지복구에 들어갔던 복구비용과 노력도 한순간에 무너질뿐더러 사업의 특성상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공공의 복리에도 맞지 않고 한번 허가해주면 중단

하기 어려우며 원상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어 공유재산 유상사용을 불허했다고 주장하나

-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제1항은 사용허가 일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항은 일반입찰 및 수의등 허가의 방법을, 제3항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3항 단서를 전제로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제20조 제4항에 규정된 원상회복의 어려움이라는 사유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4항에 대한 법리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다.

다.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1조, 제42조

- 1) 피신청인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공유임야는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하는바, 추후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조림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허가처분의 타당성을 주장하나
- 2)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1조는 공유임야의 관리에 대해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유임야의 관리에 있어 특히 경제성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지 이를 이유로 공유재산이 공유임야의 사용·수익허가 자체를 불허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인용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는 지난 3년간 253건에 해당하는 피신청인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현황 사실에 비추어 넉넉히 알 수 있다. 더욱이 같은 조례 제42조는 처분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당연히 처분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전제로 처분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에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1조(공유임야의 관리) 규정이 있다 하여 그 자체로 처분이 불허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볼 수는 없다.
- 3) 그리고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2조(처분의 제한)는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이라 함은 재산의 사용과 수익을 의미하는 관

리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재산의 현상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처분행위 및 재산권의 변동은 일으키는 법률적 처분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제41조와 제42조에서 관리와 처분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공유재산의 처분이 아니라 관리에 해당하고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2조는 공유임야의 처분시 제한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처분이 아닌 사용·수익허가신청과 관련된 본 민원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라 하겠다.

- 4)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에 대해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1조 및 제42조를 불허가사유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법리오해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기에 타당하다 할 수 없다.

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1항

- 1) 피신청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을 근거로 신청인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시 공유임야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고 추후 강릉시의 행정재산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신청인의 사용·수익허가신청에 대해 불허한다고 통지(산림과-12545, 2021. 7. 5.)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 3)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 참조), 특허는 상대방에게 권리 등을 새로이 설정하여 주는 형성적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0028 판결 참조).
- 물론 재량행위라 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함에 있어 무한정의 재량을 갖는 것은 아니고, 법규정의 위반, 사실오인, 평등원칙 위반, 비례원칙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 재량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이러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토지의 취득

목적 및 경위, 현재의 이용 상황 등 해당 재산의 제반사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의 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 및 허가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4) 이에 신청인은 공유임야의 기능저해 우려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신청원인 2.처분의 부당성. 3). ①,②에서 지목만 임야이지 현 상태는 예전 골재채취장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여 골재가 포설된 나대지이며 임야의 기능을 상실한 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신청인의 신청면적은 해당번지 전체면적 8,628㎡ 중 일부 2,694㎡를 사용함으로 임야 훼손은 없을 뿐만 아니라 복구 시 임목 식재를 통해 임야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추후 행정재산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피신청인의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이는 사실과 다르며 신청인이 2017년도에 신청하였을 때에도 상기와 같은 이유로 불가 통지를 하였던바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흥지 상태로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은 거짓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과거에 허가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및 국가장려 사업인 광산개발을 추진(야적장)함으로써 지역주민 고용 창출효과와 유흥지에 대한 공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를 통한 지방세 창출, 아울러 상당한 금액의 관외 반출방지 및 지역 장비활용으로 지방세 확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항 등에 비추어 허가함이 옳다고 주장한다.
- 5) 한편, 피신청인은 해당 사유지(산○○○번지)를 야적장으로 다시 한번 허가해 준다면 산지복구에 들어갔던 복구비용과 노력도 한순간에 무너질뿐더러 과거에 민원인들이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업의 특성상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공공의 복리에도 맞지 않고 한번 허가해주면 중단하기 힘들어 원상회복이 어려울 것이 라 판단되어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불허했다고 주장하며 또한 위원회 회의에서 산림과 담당은 산○○○번지에 대한 사용은 산△△△번지에 대한 사용을 필요로 하고 산△△△번지에 대한 복구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현재도 임야로서 불완전한 형상이 계속되어 산림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피신청인은 산△△△번지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사용·수익허가신청도 불허할 계획이기에 광산업을 전제로 하는 산○○○번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신청은 무용하고 소모적인 신청일뿐이라고 주장하는 바
- 6) 이러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신청에 대한 피신청인의 재량권행사가 그 한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번지의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피신청인의 재량권 행사가 정당한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산○○○번지의 사용·수익목적은 광산업 운영을 위한 야적장이며 이는 광산업을 위한 산지전용과 토석채취허가의 대상인 산△△△번지 등과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산○○○번지에 대한 사용·수익이 허가되어 광산업을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된다면 산△△△번지 등에 대한 복구 및 산림보호에 대한 확고한 피신청인의 계획에도 반한다 할 것이며 산△△△번지라는 또 다른 행정재산의 목적, 용도에 장애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광산업의 야적장은 허가하면서 광산업은 불허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행정재산의 목적, 용도라 함은 해당 행정재산 자체의 목적, 용도 뿐만 아니라 인접 내지 다른 행정재산의 목적, 용도도 고려하여 통일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과거에 허가가 있었던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과거와 달리 불허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허가 당시에는 향후 복구의 가능성이 긍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허가였으나 이후 진행상황을 보면 복구가 예상과 달리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도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사용·수익허가로 인하여 야기되는 임야훼손의 우려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거와는 달리 불허가처분을 한 피신청인의 판단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마. 소결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행정재산을 개인이 광산업을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드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피신청인의 불허가처분에는 형평의 원칙 등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구 공동주택건축관련 주민의견 수렴요청

민원 신청내용 요약

- 강릉시 ○○동 △△△-△ 일원에서 추진중인 ○○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지구 공동주택건축반대비상대책위원회의 주민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신청

| 결정개요 |

- 민원표시 : 제○호, ○○지구 공동주택건축관련 주민의견 수렴요청
- 신 청 인 : 비상대책위(강릉시 ○○로 ○○○○번길 ○○)
- 피신청인 : 강릉시(도시과)
- 주 문 :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 또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공동주택건축과정에서 신청인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것과 향후 강릉시 도시계획입안시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인구적 여건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 결정일자 : 2021. 11.19.

|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가. 위 ○○지구 공동주택건축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현재 ○○동 △△△-△번지 일대의 부지에 아파트 건축 예정에 대한 반대를 위한 주민들의 결성체이다.

나. 강릉시 행정절차의 부당성

1) 비대위에서는 위 사업부지에 공동주택 건축을 위하여 용도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지정받기 위한 제안서가 건설시행사로부터 강릉시에 접수되어 1차 도시계획공동자문위원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차 자문위원회의가 개최되기전 지역주민 약 900명 정도의 반대 의견에 따른 진 정서와 연대서명부를 작성하여 강릉시 도시과에 제출하였다. 이후 강릉시에서는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조건부라는 미명으로 사업자의 입안제안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주민들이 확인한바, 위와 같이 제출된 진정민원서가 위 자문위원들에게 배포조차 되지 않고

회의가 진행되어 조건부 제안으로 입안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무슨 이유로 집단민원의 의견서를 회의자료로 제공하지 않았느냐? 라는 비대위 질문에 강릉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을 위 도시계획 공동자문위원들이 이미 알고 있기에 굳이 회의자료를 배포할 필요가 없었다는 대답을 반복하였다.

2) 이후 비대위에서는 향후 진행될 경관심의위원회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민원을 회의 자료로 올려달라는 공문을 강릉시에 접수하였다. 그러자 강릉시에서는 지난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당시 진정민원서류를 위 자문위원들에게 배포하지 않은 것은 경관심의위원회 회의때 자료로 배포해 줄 것을 요청하였듯이 그 당시에는 자료 배포 요청이 없어서 자문위원들에게 자료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답변을 하였다. 당시 민원서 제출당시 분명히 수신과 참조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고 적시하였던 사실은 관련부서에서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어찌 되었든 수백명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내용을 실무부서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회의자료에 올리지 않은 것은 참석한 자문위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때부터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강릉시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다. 사업자측에서 설계한 단지 출입로에 대하여

사업자측에서는 기존 송정□□아파트와 송정해변 ■■■■■아파트 진입로를 이용하여 신축단지의 주출입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지역의 도로교통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이다. 위 진입도로의 현재 상황은 통행하는 차량의 교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이면 혼잡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기존 도로를 신축단지의 주출입로로 이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강릉시 곳곳에 이와 같은 공동주택 건축이후 주변 교통망의 혼잡으로 교통을 호소하는 단지주민들이 있다는 것은 강릉시에서 더 잘 알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사업자의 주출입로 계획을 간과하는 것은 예견될 사항을 유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사업계획은 원초적으로 단지 주출입로로 향하는 도로의 확충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송정□□아파트 초입에서부터 사업부지를 지나 신호등교차로까지의 도로확충이 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자측에서의 단지 내 출입로에 6m 확보는 근본적 문제해결책이 아니라 오로지 사업의 인·허가를 받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라. 노외주차장 위치를 안목 방향 교차로 주변으로 변경

강릉시에서는 위 계획단지내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노외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담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입안제안을 결정하였다. 현재 인근 지역주민들이 염려하고 당면한 부당함의 현실은 도로교통망의 부실을 문제삼는 것인데 강릉시에서는 이 문제는 전혀 고려함이 없이 사업자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 강릉항 부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불편을 호소하고 우려하는 주민들의 원성을 무시하고 사업자로부터의 부담금으로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이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안목항의 주차난의 해소는 사업자의 부담금이 아니라 강릉시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할 것인데 강릉시에서는 사업자측에서 단지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오히려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세대수를 더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시민의 입장이 아니라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강릉시청이라는 오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지역민의 호소는 무시하고 사업자의 사업성을 보장해 주면서까지 종변경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혹이 아닐 수 없다.

마. 건물 재배치를 통한 충분한 통경축 및 조망권 확보

강릉시에서는 사업자에게 인접한 ■■■■■아파트와의 근접으로 통경축과 조망권확보를 위해 재배치를 조건으로 입안제안을 결정하였다. 과연 통경축과 조망권확보를 위해 어디를 어떻게 얼마나 재배치하였는지 사업자측에서 제출한 계획도면으로는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사업자측에서 쉽게 이행할 수 있는 조건들로 사업자의 입장을 배려한 조건변경이라고 본다. 인접 아파트와 6m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통경축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이 이행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강릉시의 위와 같은 발상이 납득하기 어렵다.

바. 종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기준에 따라 대로 2-8호선(해안로 경포 - 안목) 30m 도로폭으로 확장한다는 이행 조건

위 2-8호선은 현재 17m 개설 도로인 것을 30m로 확장한다는 것인데 우선 그 확장부지는 사업자측에서 강릉시 소유의 구거를 도로편입에 확보하면서 강릉시에서 사업자로부터 구거를 매입하도록 하면서 개설되는 도로를 기부채납받겠다는 의도로 이 또한 주민들의 호소는 무시하고 오로지 시세 수입에만 기준을 둔 것이다. 위 도로는 나날이 교통체증이 증가되어 수년전부터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귀 기울여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다가 금번 공동주택 사업자의 제안을 받고 도로확장을 계획하는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

사. 도로 교통의 문제점

강릉항으로의 교통체증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2-8호선(해안로 경포-안목)”도로의 문제보다 강릉항으로 진입하는 경강로(동명초등학교에서 강릉항으로의 경강로)의 체증이 더 심각한 것인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보다는 오로지 사업자의 입안제안에 대한 결정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수년전부터 교통체증으로 원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였고 더 나아가 안목항에서의 주차난을 심각하게 호소하여 왔다.

아. 고려되지 않은 자연재해의 위험

최근 2~3년 사이 급증하는 신축 아파트로 자연재해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역주민들이 다. 수 십년간 한 번도 그런 상황발생이 없었던 안목 사거리는 이제 상습침수지역이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급증하는 고층 신축아파트의 건설과 개발로 상·하수의 용량을 감당할 수 없는 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발생한 현상이며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빈도가 높지 않은 싱크홀이 수차례 반복 되고 있는 인접지의 자연현상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강릉시 행정절차의 부당성 관련

- 1) 1차 진정서 상 수신자에 강릉시장, 도시과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고 표기되어 있었으나 신청인이 위원회 개최 시 진정서 자료를 배포하여 위원들에게 전달해달라는 명확한 언급 또한 없었으며 2021년 4월 13일 개최된 2021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진정서 내용이 모두 언급되었고 그 결과 조망권, 학교 학생 수용, 해안로 2539번길 교통대책수립, 주출입구와 노외주차장으로 인한 교통체증 가중으로 계획된 노외주차장 위치변경, 건물배치 문제 등을 이유로 보완·재검토하도록 “재자문 의결”되었다.
- 2) 이렇듯 1차 진정서가 접수되기 전부터 신청인의 진정내용에 대하여 실무부서나 위원회 위원들도 신축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논의하였기에 위원회에 진정서를 공유하지 않았던 것이다.
- 3) 신청인은 3차 진정서 접수 시(2021. 6. 21.) 향후 개최될 경관위원회에서는 진정서 자료를 공유해 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2021년 8월 20일 강릉시 2021년 제5회 경관위원회 개최 시 자료를 배포하여 위원들에게 공유하였다.

나. 사업자측에서 설계한 단지출입로 관련

- 1) 당초 사업 제안시에는 경강로 2539번길 주출입구 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관련 문제들에 대하여 도시과 실무부서 의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하여 개선 보완하여 현재는 “진출입시 좌회전 금지 및 단순 우회전만 가능”하도록 하여 주출입구의 기능을 축소하였고,
- 2) 경강로 2539번길에서 해안로 삼거리까지 일부 구간을 사업부지를 할애하여 3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토록 하였으며 주변 교통체증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안목사거리에서 해안로 삼거리까지 연장 510m, 도로폭 30m로 도로확장토록 보완하였다.
- 3) 또한 신청인의 요구대로 경강로 2539번길 전 노선에 대한 4차선 도로 확장을 검토하였으나, 현

재 결정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12m→18m)해야 하며 변경 시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변경가능할 뿐더러 ■■■■■ 2단지(201동) 주차장, 기존 개인 건물(6동), ■■■■■ · □□아파트 단지 내 도로 · 주차장 · 안내사무소 등 기존 건축물 편입에 따른 철거 등 여러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반영하지 못하였다.

다. 노외주차장위치를 안목방향 교차로 주변으로 변경 관련

- 1) 주차장 이전에 대해서는 강릉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결과 당초 사업시행자의 계획대로 신축아파트 단지 내 조성 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경강로 2539번길의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될 뿐만 아니라 주차장 이용에 있어서 신축아파트 입주주민들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최근 교통체증이 심각한 인근 안목사거리 일원으로 위치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당초 노외주차장 건립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현금 납부하는 것을 수용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 2) 향후 주차장 조성 위치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후 적절한 위치를 선정할 계획이다.

라. 건물 재배치를 통한 충분한 통경축 및 조망권 확보 관련

- 1) 신청인께서 염려하신 통경축 및 조망권 관련하여 저희 실무부서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에서도 검토한 사안으로 기존 인근 아파트 주민의 경관, 조망에 관한 민원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되었던 건축 규모를 축소하여 동간 거리를 일부 확장하였으며 신축아파트와 기존 담장 사이에 주변 아파트와 조화를 이루도록 조경식재를 통한 녹지축을 조성하도록 조치하였다.
- 2) 부연 설명하면 통경축 확대를 위하여 1개동 4호 조합을 2호 조합으로 축소하였고 전·후면부 전면길이, 발코니, 주방 폭 축소 등을 통하여 전면부 동간 평균 거리 7.9m→10.5m로 후면부 동간 평균 거리 8.5m→9.5m로 변경 토록하여 바람길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조치하였다.

마. 종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기준에 따라 대로2-8호선(해안로 경포~안목) 30m 도로폭으로 확장한다는 이행조건 관련

- 1) 해안로는 현재 30m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대로2-8호선)로 현재 17.2m 개설된 상황이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대상지의 공공기여계획으로 사업대상지와 접한 안목사거리에서 ■■■■■입구 삼거리까지 510m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선 변경 없이 도로폭 30m로 완전 개설(사유지 포함)하여 강릉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며, 참고로 신규아파트의 원활한 진·출입과 해안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진·출입구의 가·감속차로 확보하였으며

가·감속 차로는 신규아파트 단지 쪽으로 3m를 확장 개설하여 강릉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 2) 해안로 도로계획은 당초 주민 제안서에는 신규아파트 단지 쪽으로만 진·출 입구의 가·감속차로를 확보하는 계획이었으나 실무부서 검토의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결과 전폭(30m) 확장하여 개설토록 변경한 사항이다.

바. 도로교통의 문제점 관련

요즈음 안목, 송정 일대가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주말이면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각함을 잘 알고 있으며 관련부서에서도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다”항목에서 답변하였듯이 노외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한 이유도 안목 일대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함이다.

사. 고려되지 않은 자연재해의 위험

- 1) 최근 신축아파트 건설로 기인되는 싱크홀 발생 문제를 우려하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 시 정밀토질조사를 토대로 지반침하에 따른 대책을 강구토록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였으며 강릉시에서도 싱크홀 등 주택건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할 것이며 또한, 개별법령에 따라 관계 전문 기술자 자문을 통하여 안전장치 후 지반공사를 이행 하여 주변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2) 안목사거리 일원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택사업계획승인 시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여 원인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 3) 또한, 사업대상지 개발로 불투수층 면적증가에 따른 우수량 증가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하수시설물의 우수처리능력을 초과하는 이상 기후에 대비하여 사업 시행 전 기존 안목교차로 우수관경 확대 및 분산, 사업부지내 우수저류조를 설치하여 지정된 시간에 우수 배출 등 자체 수방대책계획을 병행 수립토록 할 것이다.

아. 결어

- 1) 현 단계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이며 실질적인 건축행위를 위하여 실행단계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후 강원도 사전승인, 건축구조심의, 건축위원회, 각종 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다.
- 2) 강릉시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 주민(사업시행자)이 제안한 계획안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 자문 및 심의, 관계기관(부서)협의, 실무검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통, 조망권, 통학, 도로, 안전, 재난 등 여러 분야별로 신규아파트 건축

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21. 2.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입안 제안서 접수(○○지구 공동주택)
- 2021. 4. 13. 강릉시 2021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입안 자문(재자문의결)
- 2021. 5. 17. 1차 진정서 접수(834명)
- 2021. 5. 24. 강릉시 2021년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입안 재자문(조건부의결)
- 2021. 6. 3. 1차 진정서 회신
- 2021. 6. 7. 2차 진정서 및 시장면담 청원 접수(비상대책위원회)
- 2021. 6. 15. 2차 진정서 회신
- 2021. 6. 21. 3, 4차 진정서 접수(비상대책위원회)
- 2021. 6. 2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입안
- 2021. 6. 28. 3, 4차 진정서 회신
- 2021. 6. 30. ~ 7. 14. 주민 열람·공고(의견서 11건)
- 2021. 6. 30. ~ 7. 27. 관련부서(기관)협의 (4개 기관, 16개 부서)
- 2021. 7. 5. 5차 진정서 접수(비상대책위원회)
- 2021. 7. 13. 5차 진정서 회신
- 2021. 7. 16. 시장님 면담
- 2021. 8. 20. 강릉시 2021년 제5회 경관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021. 8. 31. 제6회 강릉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수정의결)
- 2021. 9. 8. 6차 진정서 접수(비상대책위원회)
- 2021. 9. 9.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비상대책위원회)
- 2021. 9. 15. 6차 진정서 회신
- 2021. 9. 17. 7차 진정서 접수(비상대책위원회)
- 2021. 9. 17.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조정신청
- 2021. 9. 23. 정보공개 청구서 회신
- 2021. 9. 30. 7차 진정서 회신

4.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제2조

5. 판 단

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성격

- 1) 신청인의 민원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지구 공동주택건축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피신청인 도시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의 ○○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주민 의견서 자료제공, 단지출입로, 노외주차장 위치, 통경축 및 조망권, 해안로 확장, 주변 교통문제, 자연재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다.
- 2) 한편 공동주택건설사업은 도시관리계획부분과 주택건설사업계획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공동주택건설사업은 현재 도시관리계획단계에 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는 크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이란 도시관리계획의 형태를 만드는 행위를 말하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란 입안권자가 제시한 도시관리계획안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사업계획승인신청, 건축구조심의, 사업계획승인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 3) 그렇다면 신청인의 민원은 피신청인의 도시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민원으로 이와 관련한 현재 도시관리계획은 피신청인이 공동주택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입안제안을 받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통한 입안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열람공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열람공고기간중(2021.11.22.까지)이며 11월내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다.
- 4) 피신청인의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이러한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하여 장래를 예측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수단의 선택·조정·종합화의 과정을 통하여 장래의 일정한 질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구상 또는 활동기준의 설정을 말하며,
- 5) 이러한 행정계획은 개인의 권리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되며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그에 대해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특히 관련되는 이익들이 정당하게 비교·형량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절차적 판단

- 1) 행정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절차적 통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같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 2)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국토계획법 제27조), 주민의견청취(국토계획법 제28조)를 거쳐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국토계획법 제30조) 이상의 절차를 누락하거나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통상 당해 도시계획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3) 피신청인의 도시관리계획은 공동주택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입안제안을 받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통한 입안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열람공고와 관계기관 협의(경관위원회,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열람공고기간중(2021.11.22.)이며 11월내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다.
- 4) 소결
이러한 국토계획법상 절차와 관련하여 판단하여 보면 피신청인의 도시관리계획 추진과정에서 국토계획법상 절차를 특별히 누락하거나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적 판단

- 1) 판단기준
가) 행정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은 행정주체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나) 행정계획은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기준이나 그 설정행위를 말한다.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다만 행정청의 이러한 형성의 재량이 무제한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행정계획에서는 그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사이에서나 사익 사이에서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

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25. 선고, 2019두56135, 판결)

다) 이와 같이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의 한계는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이며 이러한 사유를 위반한 경우 그 행정계획 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다.

2) 판단대상

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진정서등 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점, 단지출입로, 노외주차장 위치, 건물 재배치를 통경축 및 조망권, 해안로 확장, 주변 교통문제, 자연재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한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서는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의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다는 사정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익형량의 한계중 피신청인의 이익형량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신청인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차회의전 진정서와 연대서명부를 제출(2021.5.17.)하였으나 실무부서의 자의적 판단으로 자문위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진정서나 연대서명부 제출전 이미 1차 회의(2021.4.13.)에서 실무부서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이 예상되는 문제를 숙지하고 있었기에 보완검토하도록 재자문의결하였고 또한 1차진정서에 자료배포를 요청하는 내용이 없었다고 하며 이후 회의자료로 올려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2021.6.21.) 경관위원회(2021.8.20.)에서는 회의자료를 올렸다고 주장한다.

다) 단지출입로에 대하여 피청인은 신청인의 요구대로 경강로 2539번길 전체도로의 확장은 불가하지만 경강로 2539번길에 있는 주출입구의 일부구간을 확장하고 진·출입시 좌회전은 금지하고 우회전만 가능토록 하였으며 해안로쪽 출입구를 개설하고 해안로를 현행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라) 노외주차장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도로교통망에 대한 고려없이 안목항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부당하며 안목항 주차난은 별도예산으로 처리해야 하고 단지내 주차공간을 노외주차장으로 대체하여 건축세대수를 증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피신청인은 노외주차장은 본래 사업대상지 내에 설치예정이었으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 안목방향 교차로 주변으로 변경하는 조건부 의결을 하였으며 이 또한 향후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부서 협의후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겠다고 한다.

마) 통경축 및 조망권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계획도면상으로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6M거리확보는 통경축 및 조망권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부족하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건축규모를 축소하여 전면부 동간거리를 변경전 7.9M에서 변경후 10.5M로, 후면부 동간거리를 변경전 8.5M에서 변경후 9.5M로 확장하였고 신축공동주택과 기존 공동주택 담장 사이에 조경식재를 통한 녹지축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바) 해안로 확장,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해안로 확장에 대해 강릉시소유의 구거를 매입하여 도로확장하는 것은 주민호소를 무시하고 시세수입에만 기준을 두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해안로를 기존 17M에서 추가로 13M를 확장하고 출입구 가·감속차로도 별도로 확보하고 종상향에 따른 부담기준을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으며 안목, 송정 일대 교통체증이나 주차난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으며 해결책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사)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신청인은 급증하는 신축아파트의 개발과 관련하여 이 지역에서의 상습 침수나 싱크홀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향후 주택사업계획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고 사업시행전 안목교차로의 우수관경 확대 및 분산, 우수저류조 설치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싱크홀과 관련하여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시 정밀토지조사를 토대로 대책마련 및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주장한다.

3) 소결

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회의자료가 배포되지 않은 행정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신청인은 자문위원들의 알권리 침해를 주장하나 2차회의에서의 자료배포요청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등 명확치 않고 1차회의(2021.4.13.)에서 실질적으로 진정서 내용이 모두 언급되었음에 1차회의의 결과인 예상되는 문제를 보완검토하도록 재자문의결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알 수 있고, 이후 회의에서도 신청인의 주장들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알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만큼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급증하는 개발과 보존의 갈등을 해소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이 없었다는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러한 사유와 정도만으로는 피신청인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라서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 다만 피신청인의 도시관리계획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향후 진행될 절차에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다.

라. 도시관리계획수립과 관련하여

- 1) 행정계획은 거의 무한대의 계획재량을 누린다는 점에서 그 내용에 대한 사후적·사법적 통제가 쉽지 않다. 따라서 어떤 행정작용보다 사전적·절차적 통제가 중요하며 특히 도시관리계획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이해충돌을 조정할 명확하고 신중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 2) 이때 고려되어야 할 이익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내 적절한 기능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3) 「강릉시 도시계획조례」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에서 강릉시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도시의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 4) 이러한 법률과 조례에서 나타난 도시계획의 원칙은 결국 개발과 보존의 균형과 조화이며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철저히 보존하고 개발할 것은 문화관광도시라는 지역의 정체성에 걸맞게 지역계획을 수립,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발과 보존의 가치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지역사회의 갈등의 주요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보존과 개발간 정책적 균형감이 중요하며 이에 따른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도시계획이어야 한다.
- 5) 개발을 위해 보존을 포기한다거나 보존을 위해 개발을 막아서는 아니되지만 중간에서 이러한 균형을 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도시개발의 근시안적 정책 속에서는 보존정책이 지역 주민의 수입을 제한하는 장애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존은 새로운 창조의 무한한 경제적 자산이라는 점에서 경제논리와 편의성만을 위주로 하는 개발은 자제되어야 하며, 특히 강릉시에 추가적인 공동주택 건설이 필요하고 바람직한지, 이미 개발된 택지나 도시재생이 필요한 구시가 부분이 아니라 그동안 보존되어 온 지구단위구역까지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여 무분별하게 팽창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해 시민 공동의 숙려를 거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6) 특히 강릉의 해안 송림지역은 희소한 자연유산이자 강릉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보호되어야 할 강릉의 대표적 지역이다. 이러한 해안송림지역은 난개발을 방지하여 해변 및 해변송림의 사유화를 지양하고 시민모두가 문화적, 환경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울러 획일화된 도시화의 개발보다는 강릉만의 고유한 독자성과 기능성을 갖춘 해변송림지역은 해양관광거점도시로서의 경제적 측면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해안송림지역은 오히려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날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기회이자 시금석이 될 수 있다.

7) 소결

이러한 개발과 보존이 하나의 도시에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공동체의 도시관리계획을 위해서 피신청인에게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존중, 무형적 가치에 대한 인정, 아울러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를 기준으로 한 관점에서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인구적 여건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환경과 자원이 지속가능한 한도 안에서 적절히 관리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 또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공동주택건축과정에서 신청인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것과 향후 강릉시 도시계획입안 시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인구적 여건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반복적 악성민원에 의한 집중단속으로 인한 영업방해

민원 신청내용 요약

- 악성민원인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이로 인한 보건소 질병예방과의 집중적이고 과도한 단속으로 신청인의 영업에 방해받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 결정개요 |

- 민원표시 : 제○호, 반복적 악성민원에 의한 집중단속으로 인한 영업방해
- 신 청 인 : ○○○(강릉시 ○○○길 ○, ○층)
- 피신청인 : 강릉시(질병예방과)
- 주 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결정일자 : 2021. 12. 3.

|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본인은 강릉에서 콜라텍영업을 하고 있는 □□□□ 대표 ○○○이라고 하며 2017년부터 강릉시 보건소, 강릉시청, 강릉소방서에 제기하는 악성민원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고민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민원을 제기한다.

나. 먼저 시작점이 된 원인은 지금의 민원인 C씨가 강릉에서 동일업종을 하고 있는 업소(■ ■ ■ ■ ■)에 대해 교묘한 방법으로 시청 재난안전과와 소방서 안전재난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오랫동안 담당자들의 고충이 있음을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찾아와서 알게 되었다. 참고로 그때 민원인 C씨는 십년동안 신청인 본인의 업소에서 부킹(찍을 이루어 줌) 및 에어컨, 선풍기 등을 켜고 끄며 도움을 주고 있었다. 민원담당자로부터 그런 사실을 전해 듣고 민원인 C씨에게 정중히 우리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동종업소에 그러면 내가 뭐가 되겠냐며 몇 차례 이야기도 하고 달래도 보았지만 전혀 타협이 되지 않아 C씨를 신청인 본인의 업소에 못오게 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7년) C씨는 신청인 본인에 대한 민원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습으로 하고 있다.

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그때 담당자들은 이해를 하며 지내왔는데 시간이 흐르고 많은 담당자

들이 바뀌면서 이젠 신청인이 어찌하였기에 민원인이 저렇게까지 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담당자들의 시선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다. 5년 동안의 일들을 글로 표현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이런 민원인으로 인하여 그때 민원을 제기하던 그 업소를 비롯하여 3개의 업소는 문을 닫았고 1곳은 주인이 바뀌었으며(콜라텍 2곳, 무도학원 2곳)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업장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다(영업에 간섭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나쁜 습성이 있음).

라. 담당기관에서는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만 하고 있다. 지금 시청 교통과, 체육과, 재난안전과, 감 사실, 보건소 감염예방과¹⁾는 많은 민원을 받고 있을 것이다. 특히 질병예방과는 오늘(10월 11일)도 민원인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0월 9일, 10일, 11일. 황금연휴 3일을 저희 업소 전속단속반으로 온 걸 보면 말이다. 담당자는 성실하게 업무에 충실한 것이겠지만 신청인 본인의 입장에서 영업방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민원인은 각 부서의 담당자만 바뀌면 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신청인이 바라는 것은 담당자가 바뀌는 것이 관공서의 법이라고는 하나 이런 민원인으로 하여금 그때그때의 담당자들과 제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므로 담당자 한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신청인 본인과 질병예방과의 언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요즘 바쁘게 돌아가는 질병예방과에서 콜라텍민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한다. 신청인은 나름대로 방역 잘 지키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말이다. 마. 민원내용에 의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법에 적용되는 처벌을 받을 것이며 시정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원제기에 따른 영업방해에 이를 정도의 과도한 점검 또는 단속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민원을 신청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017년부터 지속된 민원 제기로 인해 해당 콜라텍 영업장 지도점검을 해오고 있으며 사업주는 보건소 단속으로 인한 영업방해를 호소하고 있는 바,

나.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

- 1)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콜라텍은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주기적 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 업종이기에 특정인의 반복적인 민원제기와 상관없이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다.
- 2) 다만 특정 민원인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인해, 민원내용 확인을 위해 불가피하게 해당 콜라텍 영업장을 자주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게 사실이며, 점검결과 방역수칙 게시, 환기·소독대장 등 서류 비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변경시마다 변경된 내용을 게시물에 바로 수정 반영

1) 신청인은 감염예방과라고 기재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 질병예방과로 보정하여 판단한다.

하는 등 사업주가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함을 확인하고 있다.

3) 민원인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으나 종업원 고용 요청 등 지속적으로 법령이나 지침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질병예방과의 점검은 해당 영업장에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목적은 추호도 없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리 측면과, 특정인의 민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민원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21년 지도점검 내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점검 횟수	1	3	6	4	2	2	2	4	3	7
점검 일	28(목)	8(화) 19(금) 26(금)	10(수) 12(금) 16(화) 18(목) 21(일) 30(화)	4(일) 10(토) 21(수) 25(일)	2(일) 23(일)	13(일) 28(월)	15(목) 26(월)	6(금) 16(월) 25(수) 28(토)	4(토) 11(토) 27(월)	6(수) 9(토) 10(일) 11(월) 26(화) 30(토) 31(일)

● 과태료 부과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 영업제한 이외,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해당 콜라텍 영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 1건

위반 사항	처분일	처분 내용
2021.5.2. 콜라텍방역수칙 위반	2021.6.3.	과태료 1,500,000원 (감경) 1,200,000원

4.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21조
- 중앙사고수습본부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단계별 조치 포함)」
- 중앙사고수습본부 「2021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5. 판 단

가. 신청제목의 특정

신청인이 신청서상 ‘악성민원으로서의 피해’라는 제목으로 제출하였으나, 신청서 전체의 취지나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본 위원회에서 판단하건대 ‘반복적 악성민원에 의한 집중단속으로 인한 영업방해’로 선택하여 판단한다.

나. 판단대상

신청인은 특정 민원인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대한 고충과 이로 인한 피신청인의 과도한 집중단속에 대한 고충을 주장한다고 보이기에 이에 대해 아래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다. 특정민원인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 1) 신청인은 특정 민원인이 악의적으로 신청인의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민원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제4조(민원처리담당자의 의무)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민원을 신속 · 공정 · 친절 ·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에서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 · 공정 · 친절 ·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는 바 피신청인은 같은 법 제21조(민원처리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민원을 거부할 수 없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또한 이러한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대하여 설령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로 특정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법령과 지침에 없는 민원의 주관적 사정을 이유로 민원을 거부할 수는 없으며 그 결과 피신청인이 이와 같은 민원제기에 대하여 민원접수거부 등의 특별한 조치 없이 민원제기에 따른 점검을 하였다고 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과도한 집중단속으로 인한 영업방해와 관련하여

- 1) 비록 피신청인의 점검과정에서 2021년 총 34회의 지도점검(피신청인 제출자료 2. 처분경위) 및 1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점검이 영업방해라고 느낄 정도로 지나치게 과도한 점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2) 이는 민원제기에 따른 결과로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원제기에 의한 점검이 문제가 없다고

보이며 또한 점검과정에서 관련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과도한 집중단속으로 인한 영업방해라고 볼만큼 피신청인의 점검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마. 소결

그렇다면 신청인은 특정민원인의 지속적인 민원제기 및 이로 인한 피신청인의 과도한 집중단속은 영업방해라고 주장하지만 피신청인의 일련의 업무수행은 민원제기에 따른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강릉시 교동 〇〇〇-〇번지 등기소유자의 남문동 무번지를 남문동 〇〇번지로 경정요청

민원 신청내용 요약

- 교동 〇〇〇-〇번지의 토지가 환지과정에서 번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강릉시가 대위등기함에 따라 무번지로 등기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하여 남문동 무번지를 남문동 〇〇번지로 확인을 신청

| 결정개요 |

- 민원표시 : 제10호, 강릉시 교동〇〇〇-〇번지 등기소유자의 남문동 무번지를 남문동〇〇번지로 경정요청
- 신 청 인 : ㄱ〇〇(강릉시 〇〇〇길 〇-〇, 〇〇동)
- 피신청인 : 강릉시(도시과)
- 주 문 : 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한다.
- 결정일자 : 2021. 12. 3.

| 이 유 |

1. 신청인의 주장

가. 교동 〇〇〇-〇번지 소유자 김ㄱㄱ(1962년 사망)은 신청인 김〇〇의 조부로서 신청인은 교동 〇〇-〇번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나 현재 등기상 소유자표시가 남문동 무번지 김ㄱㄱ로 되어 있어 신청인의 조부 남문동 〇〇 김ㄱㄱ과의 동일인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세금은 납부하고 있으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민원신청대상 목적지는 아래의<표 1>과 같이 현재까지 총 2회²⁾의 환지과정을 거쳤으며 강릉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목적지가 지세명기장 및 군임야대장(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에 의거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2차 토지구획정리사업간 알 수 없는 사유로 번지가 누락되면서 현재 남문동 무번지의 김ㄱㄱ로 강릉시청을 통한 대위등기 되었다.

2) 신청인은 총 3회로 표시하였으나 환지는 교동 산 343에서 927-4로, 927-4에서 〇〇〇-〇로 2회 있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보정하여 판단한다.

〈표 1〉

환지과정	내 용	확 인	소유자
교동 산△△△		지세명기장(1932)	남문동 김□□
교동 산△△△ → ■■■■-■	토지구획정리(1969) 임야 → 토지 환지	폐쇄토지대장1(1969)	남문동 김□□
		군임야대장(1972)	김□□
교동 ■■■■-■ → ○○○-○	토지구획정리(1969)	환지에정지지정조서	남문동 김□□
		폐쇄토지대장2(1969)	김□□
교동 ○○○-○	토지구획정리(1969) 소유권보존	토지개량환지등기통지서	무번지 김□□

다. 위 목적지는 교동 갈바리병원 근처로 어릴때부터 조상의 묘가 있던 곳으로 김□□은 지세명기장 작성시점인 1932년 제적등본상 대정정(현 남문동)○○번지에 거주하였으며 남문동 ○○번지는 김□□의 부 김△△의 본적지이다.

그리고 남문동 ○○-○번지의 토지소유자는 남문동 ○○번지 김□□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며 교동 토지(○○○-○)의 재산세(토지)납부고지서상의 납세자주소도 남문동 ○○ 김□□로 되어 있고 성실히 납부중이다. 또한 중앙동사무소에 당시 남문동, 성남동에 거주하였던 동명이인 확인결과 김□□만 확인되었다.

라. 강릉시 교동 ○○○-○번지의 등기상 소유자인“남문동 무번지 김□□”은 시에서 구획정리과정에서 발생한 번지로 이에 연관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김□□의 무번지는 남문동 ○○번지로 인정됨을 확인받아 소유권행사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마.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목적지의 소유자는 남문동 ○○번지의 김□□로 확인되는 바 진정한 권리 행사를 위해 남문동 ○○번지로의 변경을 요청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74년 강릉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된“김□□”소유 토지인 강릉시 교동 ■■■■-■번지가 교동 ○○○-○번지로 환지되어, 대위등기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주소 불분명의 사유로 기재되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무번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남문동 ○○번지로 강릉시에 직권 정정을 요청하는 사항이다.

나. 강릉시 교동 산△△△번지 지적이 복구되어 교동 ■■■■-■로, 교동 ■■■■-■번지가 강릉 제3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교동 ○○○-○번지로 환지 되기까지 지세명기장(1932년), 군임야대

장(1937년), 폐쇄토지대장(1969년) 상에 기록된 소유자 및 주소는“김□□, 남문동”으로 구획정리사업 환지 등기 시 종전의 기록으로 이기하여 대위 등기한 것임. 따라서,“김□□”의 토지 상속 등기 관련하여 자료 입증 등 사실관계 규명은 상속권자인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하며, 최종 결정은 관할 등기관서 소관 업무이다.

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내용은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거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20.2.4. 소송제기(동일인 확인의 소 /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다))
- 2021.4.8.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른 심문서(서울중앙지법→중앙동사무소)
- 2021.4.12.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른 심문서 회신
- 2021.6.9. 진정서 접수(환지 과정에서 생산된 번지의 직권 정정 요청)
- 2021.6.14. 진정서 접수에 대한 자료 요청 및 부서의견 조회 (도시과 → 세무과, 지적과)
- 2021.6.17. 진정서 접수에 따른 의견 회신(세무과, 지적과)
- 2021.6.25. 진정서 회신(도시과→신청인)
- 2021.7.14. 진정서 접수(진정서 회신문에 따른 추가 회신 요청)
- 2021.7.19. 진정서 접수에 따른 자료 요청(도시과→민원증명과)
- 2021.7.22. 진정서 접수에 대한 자료 요청 회신(민원증명과→도시과)
- 2021. 7.23. 진정서 회신(도시과→신청인)

4.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8조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88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5. 판 단

가. 이 사건 신청은 강릉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김□□ 소유 강릉시 교동 산343이 강릉시 교동 927-4로의 환지를 거쳐 1974년 강릉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된 김□□ 소유 강릉

시 교동 ■■■-■가 강릉시 교동 〇〇〇-〇로 환지되어 대위등기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주소가 남문동 무번지로 등록되었고 현재 신청인의 상속권자로서의 상속등기신청이 토지소유자 주소 불분명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등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무번지로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남문동 〇〇으로 경정요청하는 민원이다.

나. 신청요건에 대한 검토

- 1) 신청인은 3.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민원신청과 별도로 2020년 2월 4일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사건번호: 2020가합509602, 동일인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다)에 소송계속중이다.
- 2) 그리고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위원회 결정) 제8호에서 위원회 결정유형중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각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민원의 각하) 제1항은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고 하며 그 사유 중 하나로 제4호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신청인은 강릉시에 대한 민원신청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바와 동일한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중에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 신청인의 신청은 최종적이고 직접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는 소송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므로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은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부적법하다고 하겠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신청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생태하천화와 강릉〇〇발전소 재가동 문제 재심의 요청

민원 신청내용 요약

-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2021. 7. 9. 의견표명한 재논의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공론화에 대한 재논의를 신청

| 결정개요 |

- 민원표시 : 제〇호, 남대천 생태하천화와 강릉〇〇발전소 재가동 문제 재심의 요청
- 신 청 인 :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강릉시 〇〇로 〇〇번길 〇,〇〇〇호)
- 피신청인 : 강릉시
- 주 문 : 강릉시는 남대천 생태하천화와 강릉〇〇발전소 재가동 문제와 관련하여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결정일자 : 2021. 12. 20.

| 이 유 |

1. 신청원인

가.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은 2021. 3. 15. 강릉시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현안인 남대천 생태하천화사업에 한 국수력원자력(주)의 강릉〇〇발전소 발전방류수가 필수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해달라는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찬반양론을 다 들은 다음 2021. 7. 9. 의결을 거쳐 2021. 7. 15. 공문으로 민원신청 기각결정과 함께 단서로 수질개선에 대한 실증적 자료와 수량·수온 조정을 위한 저류지 조성에 대한 한수원의 사업계획 자료를 제출하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표명을 하였다.

나. 한국〇〇원자력(주)는 2021. 8. 9.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수질개선 실증자료와 저류지 사업계획을 발표하였고 2021. 11. 23. 강릉시 장현저수지에서 천연광물제품을 이용한 수질개선 실증 결과를 강릉시, 강릉시 의회와 강릉시번영회 등 시민단체들이 널리 입회한 자리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였다. 민원인은 2021. 12. 14³⁾ 위원회에 수질개선 실증자료와 저류지사업계획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면서 재논의를 요청하였다.

3) 신청인은 민원신청서에 2021.12.23.으로 기재하였으나 2021.12.14.(행정지원과-29393)으로 접수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 보정하여 판단한다.

2. 사실관계

[경과과정]

- 1991. 1. 도암댐 준공 및 발전개시
 - 2001. 3. 남대천 수질오염 민원제기로 발전방류 중단
 - 2005.12.21. 국무총리실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 홍수조절용댐으로 전환 / 수질개선조치 마련
 - 수질개선효과 검토후 발전재개등을 추후 논의
 - 도암댐 문제해결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2009.12.30.
 - 체결당사자 : 지식경제부, 강원도, 강릉시, 영월군, 정선군, 한수원
 - 주요내용
 - 수질검증위원회 구성 : 2010.4.8. ~ 2012.5.30.(총 10차)
 - 수질검증기간 : 1년
 - 수질검증기준 : 환경부 수질기준 → 환경부고시 제91-35호 상류는 1등급, 하류는 2등급
 - 수질검증결과에 따라 방류 여부 결정
 - 수질검증결과 : 부적합
 - 수질개선시설 설치(도암댐 입구): 2010.7 ~ 2010.10.
 - 시설내용 : 3FM(유연성 섬유사 여과장치)
 - 한수원 한강OO본부 사업자등록증 반납 : 2017.2.28.
- [사회갈등조정위원회]
- 2021. 3.15. 민원접수
 - 2021. 4. 2. 4월 정례회 안건 상정 및 논의
 - 2021. 6.11. 6월 정례회 논의
 - 2021. 6.23. 6월 임시회(제1차) 논의, 민원신청인측 참석하여 설명
 - 2021. 6.30. 6월 임시회(제2차) 논의, 반대측 참석하여 설명
 - 2021. 7. 9. 7월 정례회 논의, 찬성측 참석하여 설명, 위원회 결정
 - 2021. 10.8. 10월 정례회 논의, 한수원 참석하여 설명
 - 2021. 11.23. 장현저수지 수질개선사업 현장설명회
 - 2021. 12.14. 보완요구자료 제출
 - 2021. 12.17. 재논의 신청서 제출

3. 판 단

가. 우리 위원회는 2021. 7. 9. 민원 제13호(강릉 남대천 생태하천화와 강릉OO발전소 재가동의 동시해결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수질개선에 대한 실증적 자료 및 저류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등 자료 제출시 재논의 할 수 있음을 의견표명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나. 수질개선에 대한 실증자료 제출 관련

수질개선에 대한 실증자료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릉시 장현동에 소재한 장현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질개선 전·후 수생태영향조사를 2021. 10. 12.부터 2021. 11. 23.까지 43일 동안 한국OO원자력(주), 농어촌공사, 사단법인 한국수생태복원협회가 참여하여 <표 1>조사항목 및 <표 2>주요결과와 같이 주요 수질항목분석결과 부유물질, 총인, 클로로필-a 등 분석된 모든 항목이 호소생활환경기준 1a~1b등급으로 개선되었으며, 식물플랑크톤 분석결과 부영양화 지표종인 남조류 우점환경에서 영양염류 농도가 적은 환경에서도 서식하는 규조류 우점환경으로 개선되었고, 수질개선 사업전·후 생태독성 분석결과 물벼룩과 발광박테리아 생태독성이 모두 0으로 조사되어 생태독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한다.

<표 1>

조사항목	
• 수질항목	부유물질, 총인, 클로로필 a, 총유기탄소, 탁도, 투명도 등
• 생태항목	동·식물 플랑크톤
• 생태독성	물벼룩, 발광박테리아
• 기타항목	저서생물, 어류 등

<표 2>

지점	시기	부유물질 (mg/L)	총인 (mg/L)	클로로필-a (µg/L)	총유기탄소 (mg/L)	탁도 (NTU)	투명도 (m)
1	전	79	0.429	128.6	13.1	257	0.5
	후	2.6	0.015	불검출	0.6	3	2.0
2	전	16	0.064	12.3	4.0	15	0.7
	후	0.5	0.012	불검출	0.4	3	2.0

다. 저류지에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관련

하류저류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주)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표 3>및<표 4>에서 보듯이 수질, 수량, 수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질등급 최종확인 및 미충족시 침전조역할, 수질기준측정 기준점 및 일정수량유지를 위한 조정지 역할, 수온차 조절을 통해 발전방류수와 비발전방류수에 유량변동으로 인한 부정적 역할의 최소화와 남대천 하천유지용수의 변동 폭축소를 통해 지속적 물순환 및 수량확보를 통한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저류지 및 조정보를 한국○○원자력(주)가 자체 사업비(100%)를 조달하여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표 3>

명 칭	• 저류지
용 도	• 수질등급 최종확인 및 미충족시 침전조 역할 • 수온차 조절
시설계획	• 강릉○○발전소 내 옥외변전설비 이전부지 내 약 5만톤 규모
사업재원	• 4,882,712천원(부가세 및 제경비 제외) • 한국○○원자력 자체 사업비(100%)조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약 6개월 (하천점용허가등 강릉시와의 행정처리기간 필요)

<표 4>

명 칭	• 조정보
용 도	• 일정수량을 지속적으로 흘려주기 위한 위한 조정지 역할 • 수질측정 기준지점 역할
시설계획	• 보광천 합류지점 전 20만톤 규모의 조정지 보 신설
사업재원	• 2,762,500천원(부가세 제외) • 한국○○원자력 자체 사업비(100%)조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약 6개월 (하천점용허가등 강릉시와의 행정처리기간 필요)

라. 공론화요청 관련

- 1) 강릉○○재가동으로 인한 발전방류 여부는 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중대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하고 나아가 지역현안에 대한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현재 강릉○○발전소의 재가동으로 인한 발전방류수의 수질문제와 관련하여 기술적, 환경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수처리기술상 개선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논의를 위해서는 공론화의 과정으로 심도 있는 논의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3) 한편 2001년 당시의 남대천 수질오염으로 인한 방류중단은 강릉전체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내린 결과였으며 이후 20여년이 경과한 현재 찬성하는 의견도 상당히 형성되었으며 오히려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 찬 반여부를 떠나 과거나 현재의 상황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에 세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한 현재는 발전재가동여부를 떠나 공론화자체에 대한 요구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유역변경식 발전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반대의견 있음).
- 4) 수질개선 실증문제는 우리 위원회가 민원 제13호(2021. 7. 9.)에 대한 결정에서 의견표명한 것은 도암호에 대한 수질개선의 실증적 자료였으나, 2021. 12. 17. 제출된 자료는 장현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이었고, 이를 통해 수질개선가능성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된 수질개선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통해 공론화 결정 여부에 대한 요건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론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재논의 전제조건이 도암댐에 대한 수질개선가능성이므로 장현저수지 수질개선으로는 부족하다는 반대의견 있음).
- 5) 또한, 저류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의지나 예산확보문제도 중요한 문제로서 민원 제13호(2021. 7. 9.)에 대한 의결서에서 논의되었었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원자력(주)이 제출한 강릉○○ 하류 저류지 조성계획(안)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저류지 운영에 대한 계획 내용이나 현실성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반대의견 있음).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강릉시는 남대천 생태하천화와 강릉○○발전소 재가동 문제와 관련하여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고충민원의 접수 및 사무국 처리 목록

일련 번호	민원인	민원내용	조치내용
2021- 1	초〇〇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사매립 으로 신청인 소유지내 소나무가 고사되어이에 대한민형사상의 책임규명과 손해배상	○상담 후 민원접수 ○현장조사 ○의견표명, 각하
2	〇〇 임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분양전환관련 입주자 자격문제	○민원상담 ○민원접수 ○부영본사방문, 조정가능성 타진 ○기각
3	ㅎ〇〇외 3인	남대천생태하천화와 강릉수력 발전재가동 동시해결	○상담 후 민원접수 ○기각, 의견표명
4	〇〇 치킨	공사현장 환경피해	○〇〇아파트 공사현장 비산먼지 및 소음 ○환경과 문의 후 안내 ○환경과 답변 : 이미 현장확인 후 조 치하였음(살 수시설 및 세류시설, 방진망 준수 요청) ○현재상황에 대한 설명 후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
5	ㄱ〇〇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〇〇아파트 분양전환관련 ○강릉시 및 전국적인 상황 설명 ○향후 절차 및 문의사항에 설명
6	ㅅ〇〇	한의원 이전신고수리거부관련	○동일장소에 기존영업자의 폐업 신고가 되어 있 지 않음을 이유 로 수리거부 ○담당부서 확인후 전화드릴 것을 안내 ○담당부서에서 이전신고 수리가 가 능함을 확인 후 이에 대한 안내
7	ㄱ〇〇 외 2명	장덕리 마을 진입로 보수 및 포 장공사	○담당부서 이첩안내 ○담당부서 이첩(건설과)
8	ㄱ〇〇외 3명	도시공원(포남1공원)편입토지 반대	○처리절차 안내 ○담당부서 이첩(녹지과)
9	ㅈ〇〇	구정면 여찬리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우수피해, 통행로 확보	○민원상담 ○처리절차 및 문의사항 안내

일련 번호	민원인	민원내용	조치내용
10	ㄱ〇〇	남문동 30번지 토지구획정리 및 환매과정에서 무번지등재되 어 상속등기가 안됨	○민원상담 ○관련부서(도시과)안내 및 처리절차 안내
11	ㅇ〇〇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등록에 대 한 민원	○민원상담 ○담당기관 및 등록절차 안내
12	ㅈ〇〇	하수와 공사로 인한 피해호소	○민원상담 ○담당부서 이첩(하수과)
13	ㄱ〇〇	광산운영을 위한 야적장 목적의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불허	○민원상담 후 민원접수 ○기각
14	ㄱ〇〇	시유지와의 경계문제로 설치된 펜스로 주거출입의 어려움이 있 어 펜스철거요구	○민원상담 ○관광과에 민원인 입장 전달 및 해 소방안 협의 ○민원인에게 관광과 입장 전달 및 재협의를 안내
15	〇〇 지구 공동주택 건축반대 비대위	주민의견 수렴요청	주민의견 수렴요청
16	ㅇ〇〇 외	안전화력건설관련 횡집 보상요 청	○시행사 및 시공사와 횡집 업주들 간 처리되어야 할 배상문제임을 안내
17	ㅇ〇〇	반복된 악성민원으로 인한 과도 한 행정단속	○민원상담 ○민원접수 및 향후절차 안내 ○기각
18	ㄱ〇〇	환지과정에서 야기된 남문동 무 번지를 남문동 30번지로 경저 요청	○민원상담 ○민원접수 및 향후절차 안내 ○각하
19	초〇〇	축산단지건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민원상담 ○민원접수 및 향후절차 안내
20	ㅂ〇〇	서핑중 발생한 과실치상관련 기 소여부 및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상 과실치상등과 관련한 민원 상담
21	〇〇〇〇 〇〇〇〇 시민모임	수질개선에 대한 실증적 자료 및 저류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 업계획서 등 자료가 제출되어 재논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공론화를 요청	○민원접수후 처리절차 안내 ○의견표명

위원회 주요활동

>> 위원 위촉식(2021. 6. 3.)

- 고광록, 최승용, 장분성, 윤도현, 심재범, 최정경 위원
- 임 기 : 2021. 6. 3. ~ 2023. 6. 2.



>> 민원 당사자 의견 청취



>> 민원 상담



>> 민원 현장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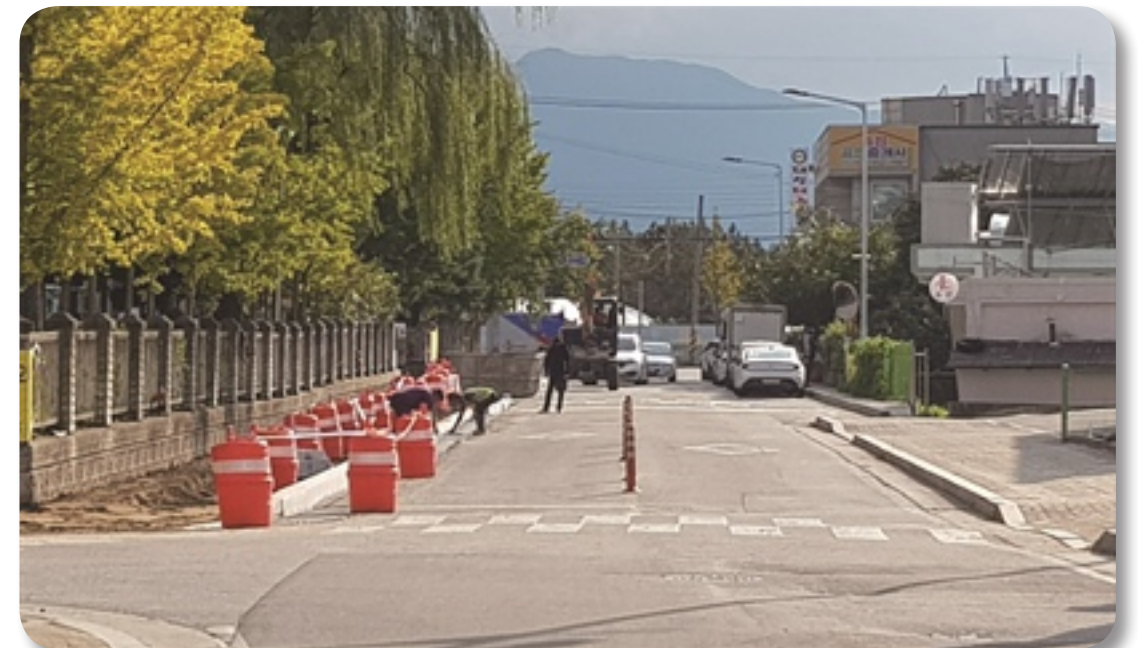
(불법벌목 및 침수피해 보상 민원)(2021.1월)



(불법벌목 및 침수피해 보상 민원)(2021.1월)



(공동주택 건축반대 민원)(2021.11월)



(공동주택 건축반대 민원)(2021.11월)

>> 장현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설명회 (2021.11.23.)



>> 위원회 회의 모습



III

부록

- 강릉시위원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강릉시위원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8.11.14 조례 제127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충민원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다수인민원, 사회갈등 등의 신속·공정한 조정 또는 해결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다수인민원”이란 다섯 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3. “사회갈등”이란 강릉시(이하“시”라 한다)가 공공정책(자치법규 제·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사무국”이란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6.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사회갈등 등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권고,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 개선 권고 등 처리
2. 주민이 신청한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3.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사회갈등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4.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의 결과 또는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5. 민원사항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교육·홍보
7.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권익구제 기관·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관할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시 분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2.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또는 출연기관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고충민원 등의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④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위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⑥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7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제6조·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11조 제1항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 ③ 위원이 제2항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복합된 내용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달리할 수 있다.

- 1. 시정권고 :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2. 의견표명 :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제도개선 권고 :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도개선 의견표명 :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합의 권고 :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 6. 조정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

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각 :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8. 각하 :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9. 이첩 :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경우
10. 심의안내 :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제13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제16조(사무국)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직원을 두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③ 시장은 사무직원 중 근무 경력 및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⑥ 시장은 제3항 및 4항에 따른 근무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우대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8.12.27 규칙 제63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회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시정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2.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써 이해관계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
3.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제2장 민원의 접수·조사

제3조(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재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관할 대상(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사회갈등조정(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시 신청서의 보완을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주민이 신청한 민원과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의뢰받은 민원(이하 “접수된 민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의 대리 등) ① 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이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집단민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 선정통지서를 제출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5조(민원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 등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민원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 방법을 안내하거나 해당 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관련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제4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조(관련기관 이첩 등) ①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관련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은 관련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관련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의 장이 접수한 민원 중에서 세 개 이상의 부서가 관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이첩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민원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날을 민원 접수일로 본다.

③ 위원회와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위원회와 강원도 갈등조정위원회 등에 중복 신청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신청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위원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사통보서를 신청인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접수일 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회갈등 조정의 경우 사안에 따라 제1항의 조사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추진상황을 위원회에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등에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2.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현지조사
4. 감정의뢰

②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하 “조사위원 등”이라 한다)이 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신청인, 이해관계인, 관련기관의 장 등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 등은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서면(공문 포함)·구술·녹취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조사위원 등은 피조사자가 여성,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성년의 여성 또는 대리인 등의 입회하에 조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집단시위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와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의 중지 등) ① 위원회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취하한 경우
 4. 그 밖에 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의 경우 관련기관과 신청인에게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반복 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같은 사람일 경우에는 종결처리 하고, 다른 사람의 경우 이미 처리한 내용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민원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3조(합의) 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를 마친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합의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③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조정) ① 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위한 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 관련기관의 직원,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결과보고 등) ① 조사위원 등이 민원의 조사를 종료한 때(제11조의 중지 등을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부의하기

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첩 등의 방법으로 종결처리한 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위원회 운영 및 관리

제16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 회의소집)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통지하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가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 의결사항 등)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2조에 따른 결정사항
 2. 제26조에 따른 재심의 결정사항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상호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4. 위원회 소관 시행세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2. 위원의 위·해촉 사항
 3. 위원회 관련 조례·규칙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14조에 규정된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5. 민원 접수 · 처리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민원의 조사 · 처리과정에서 화해, 조정의 성립 등 중요사항
7. 위원회가 의결한 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8. 민원처리 실태조사 및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9.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제19조(의안 작성 · 배부 등) ①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일 4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무국장은 의안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및 직원이 보충 설명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필요한 간사의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하되, 직원으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견청취 및 출석통지)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기관의 공무원 · 신청인 · 이해관계인 ·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련기관 ·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이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결서의 경정) ①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 · 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서 경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경정된 의결서

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일시 · 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25조(결정의 통지) ① 위원회는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민원의 결정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신청인과 관련기관의 장 등 관계인에게 의결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 · 통지 전에 관련기관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 제도개선 등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의 의견을 사전에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관련기관의 장 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재심의) ① 제25조에 따라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법리오해, 사실관계 등의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재조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의에 부의하거나, 관련기관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다.

제27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 · 점검) 위원회는 제25조에 따라 통보한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관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 ·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위원회가 확인·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28조(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련기관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사무국 운영

제29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의 안내·상담·접수 및 조사·처리 지원
2.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민원 편람·서식 등의 비치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30조(운영상황 보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2.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내용
3. 관련기관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수당과 여비)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 안건 심사, 민원현장 확인·조사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신분증명서) ① 위원회 위원에게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대장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신분증명서를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 재발급할 수 있으며, 위원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3조(위원회 사무의 전결) 위원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결처리 할 수 있으며,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별표)와 같다.

제34조(기록의 관리) 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제35조(정보의 공개) 민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등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 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8.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당의 책무) 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 · 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 · 홍보 계획의 수립 · 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 · 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 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 · 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 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 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 · 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 · 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 · 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 · 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 · 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

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제25조에 따른 파견 공무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

어서 이를 제외한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3.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3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내부규정
-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삭제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

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 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

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 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 · 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 · 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 신청인 ·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 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 감사원 ·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 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 · 알선 · 조정 ·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 · 결정 · 재결 · 화해 · 조정 ·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

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 ·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 ·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성급(將星級) 장교
6. 국회의원

⑥ 제5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

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60조(조사결과와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5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

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5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분보장등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은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고,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2.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3. 각하결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다른 신분보장등조치의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

5.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신분보장등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화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신분보장신청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

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疏明)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7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공직자인 신분보장신청인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및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인사조치 요청과 관계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받은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과 소속기관장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소속기관장등”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신고한 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 권고나 화해안에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해안의 작성, 화해조서의 작성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6조의2(협조의 요청) 위원회는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단체 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

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⑥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 및 협조자”로 본다.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회계·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1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보상금등”)이

라 한다)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다.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 칙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9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

은 고충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도교육청평가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3(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2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벌 칙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기관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기관이 위원회로부터 송부받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조금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부패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부패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위면직자등이 된 사람은 제8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2021년도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보고서

발 행 일 | 2022년도 4월

발 행 처 |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

편 집 |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

주 소 |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전 화 | 033-640-5793~5794

팩 스 | 033-640-4453

홈페이지 | 강릉시청 홈페이지 www.gn.go.kr

시민참여 > 사회갈등조정위원회